

제 10 회

경기총회 회의록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第10回 財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期總會
速記錄

日時： 1976年 12月 11日(土) 13:00時

場所： 國會事務處 146號 會議室

會 順

1. 開會
2. 國民儀禮
3. 會長人事

4.	來賓祝辭																		
5.	成員報告																		
6.	前次會議事錄通過																		
7.	會務報告																		
8.	1976年度	決算承認	吳	監查報告															
9.	1977年度	事業計劃(案)	吳	預算(案)	承認														
10.	定款改正	の	件																
11.	役員改選																		
12.	其他																		
13.	廢會																		

(13時 15分 開議)

○司會 黃寅河(事業部長) 지금으로부터 社
 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0回 定期總會를
 開議를 하겠읍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읍니다.

(國民儀禮)

다음은 會長님의 인사말씀을 金鎭基副
 會長님께서 代讀하시겠읍니다.

○副會長 金鎭基(代讀) 丙辰년도 이제 열
 마 남지 않은 오늘 社團法人 大韓速記

協會 第10回 定期總會를 閉會함에 있어
 會員 여러분께 致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來賓 그리고 會員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낼 때마다 多事多難했던
 한 해라고 말합니다만 올해도 우리는 安
 保面에서나 經濟面에서 끊임없는 挑戰과
 試鍊을 겪은 바 있습니다.

國際的으로는 石油波動이 물고온 世界
 的인 經濟不況과 인플레이, 和鮮와 共存의

界田畝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없는 局
 地戰爭 등 激動하는 周辺情勢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 8月18日 北傀가 計劃的으
 로 일으킨 板門店 도끼 事件 때는 韓
 美兩國이 斷乎하고도 機敏한 対応策으로
 그들의 侵略企圖를 粉碎한 바 있습니다.
 国内的으로는 社會不條理 척결을 위한
 度政刷新作業을 強力하게 推進한 보람이
 있어 蕪新하고도 意慾的인 氣風이 社會

全般에 걸쳐 팽배해 가고 있고 朝總聯
 系 在日同胞의 母國訪問事業의 成功과
 持續的인 高度經濟成長으로 우리의 国力
 은 날로 伸長되어 國際的인 地位도 鞏
 固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온 國民이 우리의 領導者를 中
 心으로 굳게 똥쳐 國內外的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克服한 結果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來年은 우리 大韓速記協會로서는 創立

열들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우리나라 速記術의
 大衆普及과 學術的 研究發展 그리고 速
 記人의 資質向上을 圖謀한다는 基本方向
 아래 年2회씩 速記講習을 실시하여 速
 記人의 底邊擴大를 期했고 短期講習用法
 式을 開發하여 實用段階에 이르렀으며
 速記人의 資質과 體力向上을 위해
 體育大會를 開催하는 등 많은 行事を 벌
 어 왔습니다.

더우기 今年에 그 實現을 보게 된
 우리 會員의 待望의 對司法部 進出은
 그동안 國會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던
 우리나라 速記界를 위해 劃期的인 成果
 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協會가 우리나라 速記文
 化暢達을 위해 작으나마 중요한 役割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會員 여러
 분의 協調와 任員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의 所致임을 確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現實에 滿足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고 社會를 위하며
 나 自身을 위한 보다 앞찬 前進을 위
 해서 우리는 새로운 覺悟와 決意를 다
 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協會活動을 査核 分
 析해 보고 反省하며 더욱 奮發하여 우
 리 協會가 名實共히 速記人の 總結集
 體로서 速記文化 暢達이라고 하는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協會로 계속 發展되게끔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定期總會를 맞아 會員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巨大한
 建物도 벽돌 한창 한장을 쌓아 올려
 建築을 하며, 그 벽돌 한장 한장이 단
 단할 때 비로소 그 建物도 堅固해 지
 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會員 한 사람
 한 사람이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積極
 的으로 參與하는 風土가 造成될 때 마
 침내 우리 協會도 確固한 基盤을 가진

進取的인 協會로 成長될 수 있다는 事實입니다.

會員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마당에 우리는 이제 묵은 해를 整理하고 希望찬 새 해를 맞을 送旧迎新의 차비를 차려 새해에는 더욱 意慾的으로 努力하여 더욱 前進하는 우리 協會, 우리 社會, 우리 國家가 되도록 다 함께 合心할 것을 期待합니다.

끝으로 大韓速記協會의 夸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것들기를 祈願하는 바 입니다.

1976年 12月 11日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會長 金 龍 泰

(一同 拍手)

4. 來賓祝辭

○司會 黃寅河 다음에는 來賓祝辭의 順序로 黨協會 顧問이신 國會運營委員會 劉龍珪 專門委員께서 祝辭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顧問 劉龍珪 반갑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과 因緣을 맺어가지고 黨協會의 各種行事に 參席을 해왔습니다.

參席할 때마다 말씀드리게 되는 事項

입니다마는 速記라는 이 業務自体를 여
 러분 스스로가 상당히 高度化된 技術로
 認定을 하고 있고 또 國會에 貢獻하는
 힘이라든가 또 國家에 貢獻하는 힘 歷
 史的으로 貢獻하는 힘이 상당히 多大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速記自体에 대한
 認識普及에 있어서 어느정도 미흡한 점
 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제 자신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누차 말씀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인 速記協會 成立이 되어가지고 10年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速記에 대한 認識이
우리 社會에서 그다지 널리 普及이 되
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先進國에서는 速記의 重要성과 速記의
社會進出度가 상당히 넓은데 반하여 우
리나라는 아직도 國會만이 그 主流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서 派生되는 業務自

體라는 것이 극히 稀少價値로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전에 會長인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행히 法院에서 지금 速記業務를 導入을 해서 우리 國會出身의 速記士 一部人員이 현재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의 隘路點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隘路點은 여러분들이 速記를 普及하는 가장 중요한 任務를

그리고 法院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情狀도 감수를
 해서 速記하 底邊擴大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 자신들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社
 團法人으로서의 創立을 위해서 東奔西走
 뛰고 애썼던 분하고 아까 들어올 때
 잠깐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직접 速記는 모릅니다마는 速記
 界의 흐름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

의 한 사람으로서 좀 여기서 祝辭 겸
 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速記自体에 대한 認識을 좀더 널리 普
 及하는데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速記人の 權益問題가 抬頭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스
 스스로가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
 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 여러분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실정도 잘 알고 여

러분들의 여러가지 難點이라든가 隘路라
 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認識이 널리 普及이 되
 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認識을 없애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權益도 물론
 라가고 速記自体의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年이란 세월을 통해가지고 여
 러분들이 남긴 業績은 상당히 다대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業績이 빛날 수 있
 고 또한 이것이 영원히 어떠한 業績으
 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여러
 분들이 마련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실이 우리 社會에 널리 普及이 되고
 하는 방향에서 本協會에서 상당히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
 는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事業中

에서 講習會 혹은 資格審査制度 같은 것
 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資格審査에
 서 資格을 띤 사람들을 이라든가 速記講
 習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速記의 重要
 性 이라든가 速記自体가 지니고 있는 그
 런 任務가 무엇이 라는 自体를 그들 스
 스로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傳播될 수 있는 그런 敎育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간혹 갖고 있
 습니다.

지금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養成生들을
 養成을 하고 있음니다. 이는 速記가
 어느 만큼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50名
 내지 100名이 入所를 해가지고 불과 거
 기서 年數이하의 人員이 修了를 하고
 보면 修了를 하지 못한 人員들의 速記
 認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음니다.

즉 열심히 1年向의 修系을 받아 가지
 고 자기 실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생
 각치 못하고 速記自体에 대한 認識自体
 를 그르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
 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런 要素가 여러분들의 發展이라든가
 底辺擴大를 위해서 어느 정도 障礙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본 일
 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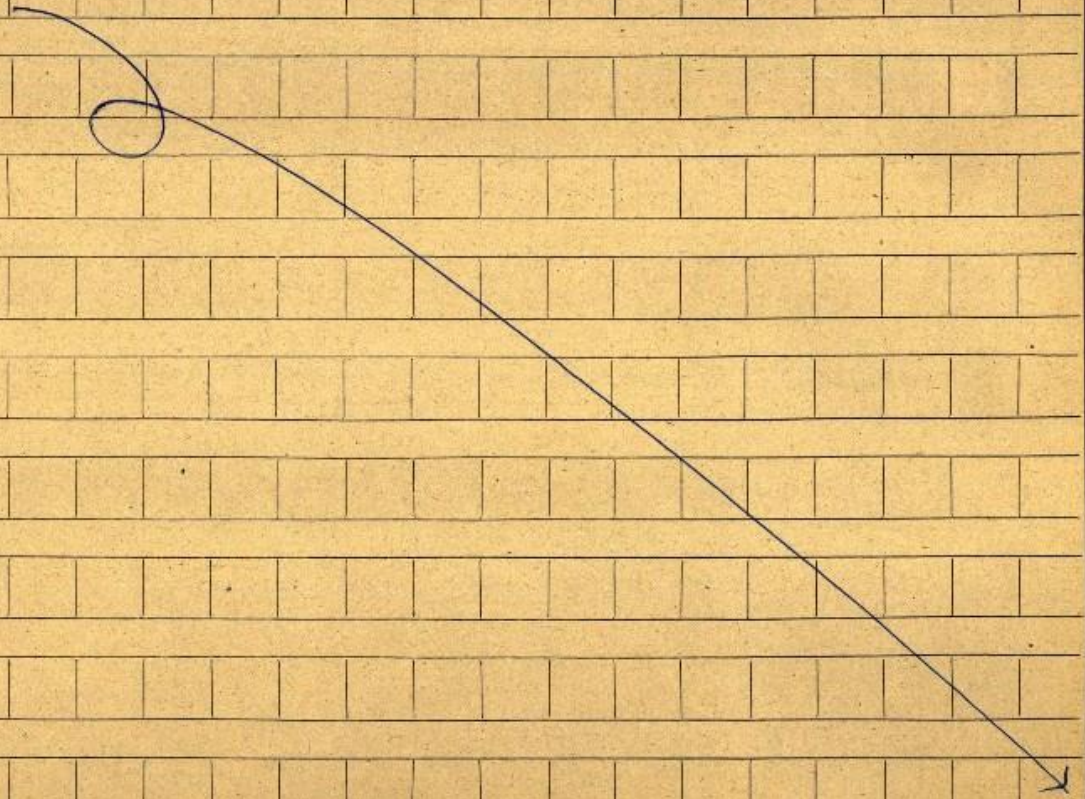
각자 각자 個人이 그런 면의 認識을
 새롭게 해 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鼓吹시켜 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
 았읍니다.

여하간에 이러한 상황은 제 자신 이렇
 게 여러분과 생활을 같이 하고 여러분
 들을 잘 알고 있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간
 후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갖는 일입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

해서 일부 제가 생각하면 그런 바를
披瀝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發展을
위해서 제 자신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런 사실을 어떤 特定
수에게만 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 스스로가 速記關係에 대한 發展
協습의 發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
다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 간단
히 祝辭에 처하고자 합니다.

(一同 拍手)



5. 成員報告

○司會 黃寅河 다음에는 高太仲 總務部長
으로부터 成員報告가 있겠습니다.

○總務部長 高太仲 成員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在籍會員數 148名中 현재 95名이
出席했습니다.

그래서 成員이 된 것을 報告드립니다.

2

6. 前總會議事錄通過

○司會 黃寅河 이어서 會長님을 代理하여 副會長님께서 總會議事를 진행하시겠습니다.

○議長 金鎭基 會議順序에 依해서 다음에는 前總會議事錄通過가 있겠습니다. 理事長 나오셔서 議事錄을 朗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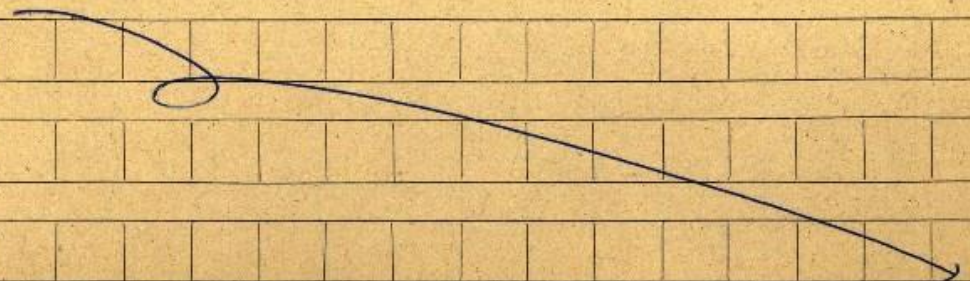
○理事長 崔錫模 第9次 總會議事錄을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前總會記事錄朗讀)

○ 議長 金鎮基 지금 9次總會記事錄을
朗讀했는데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지적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못 된 점이 없으면承認된 것을
宣布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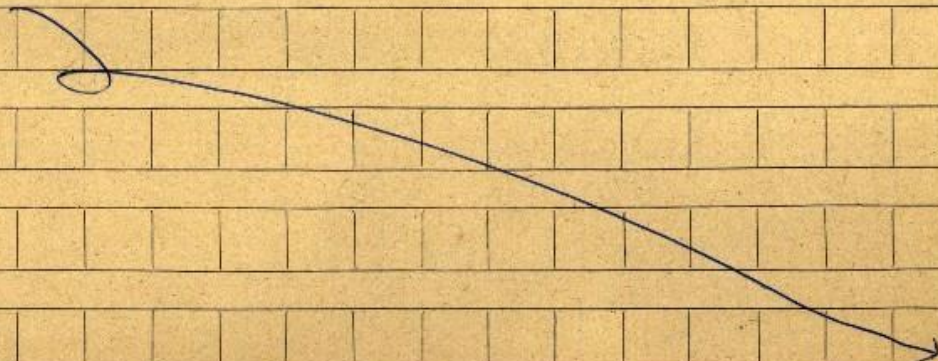


7 會務報告

○ 議長 金鎮基 다음은 會務報告가 있겠
습니다

○ 理事長 崔錫模 油印物에 따라 會務報
告를 드리겠습니다.

(會務報告)



8. 1976年度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 議長 金鎭基 다음은 1976年度決算承認 및 監査報告를 上程하겠읍니다.

決算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理事長 崔錫模 1976年度決算報告를 드 리겠읍니다.

이것은 지난 해 12月20日 부터 今年 12月1日 字까지의 決算입니다.

(決算報告)

이상 간단히 決算報告를 드렸읍니다.

○議長 金鎭基 지금 決算報告를 하셨는데
 決算에 대해서 그동안 監事가 監査
 를 했읍니다.

監査에 대한 結果를 報告해 주세요.

○監事 金善弼 1976年度 저희 本協會
 會務全般에 대해서 監査한 結果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歲入部分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에도 理事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만 우리 協會의 基本收入으로서는 會員

여러분들이 納付해 주신 이 會費에 있
 어서 昨年總會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協會의
 특수한 사정도 있겠음니다마는 會員들이
 여러곳에 勤務하고 있기 때문에 會費
 를 徵收하는 專担部署나 要員을 갖고
 있지 못한 協會로서는 月會費나 予算을
 算出하는데 있어서 좀 目標達成을 못하
 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今年에도 月會費가 120人を 基準으로 해
 서 28万 8,000 원이 合計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決算額이 24万 1,000 원으로서 4万 7,0
 00 원의 歲入缺陷까지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런 상태로 지속해 나
 갈 것이 아니라 어떤 劃期的인 徵收方
 法이나 未納會員에 대해서 어떠한 處理
 를 할 수 있는 研究가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事系收入이 있어서 는 放學을

이 용한 講習에 있어서 訖事堂이 汝矣島
 로 옮겨가지고 이번이 總收入 予算을 상
 당히 減少될 것으로 우려했음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予算額인 120 万 46 00 원보다도 28 万 79 00 원
 이 더 많은 149 万 29 00 원이 歲入이 되
 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移越金 92 万 餘 원 贊助金
 등 해서 歲의 總額인 29 9 万 95 55 원보다
 約 50 万 96 00 원이 증가된 350 万 91 82 원의

歲入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歲出圖에 있어서 는 조금 전에
 理事長께서 決算報告를 통해 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總
 資料에도 전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마는 計劃에 대해서 는 다 일일이 말
 씀하지 않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 이 收入支出传票整理에 있어서
 설명 내역을 좀더 명확히 기재해 서 누가

언 제 보 더 라 도 一 目 瞭 然 하 게 그 내 용 을
 把 握 할 구 있 어 야 되 겠 는 데 이 것 이 좀
 미 흡 한 점 이 있 다 는 것 을 의 견 으 로 말
 스 드 리 겠 음 나 라 .
 을 때 르 제 회 協 會 事 務 에 있 어 ^서 는 이 편
 事 務 을 막 론 하 고 現 金 의 出 納 時 에 는 收
 入 支 出 元 帳 과 信 票 의 記 載 가 다 같 이 처
 理 가 되 어 야 하 는 데 도 불 구 하 고 收 入 內
 에 서 支 出 한 다 는 이 런 형 식 으 로 해 기 지
 고 差 減 殘 額 만 이 元 帳 에 記 載 가 되 었 던

것도 문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出納時에는 이
帳簿記錄과 通帳이 어느정도 부합이 되
어야 하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
음니다.

이상의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 計算에
대해서는 決算書이 나와 있는 것과 별
相違가 없는 것을 여기 보고드리겠음니

다

감사합니다.

○ 諷長 金鎖基 지 금 監查報告에 있어서
 計數에 있어서 는 異諷가 없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全体計數監查結果는 錯誤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되 監事가 지적
 한 事項에 대해서 答復할 것이 있으면
 答復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나

지금 몇 가지 指摘事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요.
 ○理事長 崔錫模 지금 監~~査~~^事님께서 會費
 徵收關係 또 120人을 기준으로 해서
 未納者가 있었 다 그리고 收入支出의 伝
 票가 明細가 잘 맞지 않고 出納明細도
 잘 맞지 않는 아는등 여러가지 指摘~~言~~^言이 있
 었는데 저의 總務部長께서 일을 같이
 보시다가 法院으로 가신 그런 관계가
 있어서 引受~~審判~~^{審判}에서 날라가 많이 있었

으면 저희가 대신 했을 텐데요 그 대로
 다른 사람이 맡아 보고 해서 어떻게
 記載方式이 서로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錯誤가 있는 것 같습니다
 會費關係도 저희가 조금 성의 부족으
 로 일일이 밖이 나가 있는 會員들한테
 찾아 다니면서 맡아와야 하는데 200
 원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기도 뭐하
 고 이래서 總當 總當 總當 總當 總當
 고 해 왔습니다

그 래서 그 관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음니다마는 이것을 參考로 해서 알은
 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 議長 金鎭基 알의로 任員이 바뀌는에
 오늘 論議된 것은 참작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지마는 제생각에는 제일 基
 本的인 문제가 伝票가 누가 보더라도
 一目瞭然하게 整理가 안 되어 있는 것
 이 問題點이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預
 金通帳과 帳簿의 金額이 일치되지 않는

다는 데에 向題點이 있는 데 그 첫째 지
 적한 것은 行政上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둘째 번의 預算
 通帳과 帳簿의 出納이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 다 .
 協會運營은 누가 맡을 지가 그 것이
 일치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알기로 새
 로운 任員陣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実務者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요.

○ 總務部長 高太仲 . 지금 監事께서 말씀
하시는데 대해서 実務者로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問題點이 뭐냐 하면 그
건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慶弔
事가 있을 때 저희協會에 있는 基金
을 借用해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
다.

이것을 저희들이 借用證書를 받고 伝
 票에는 일일이 다 물림니다마는 金錢出
 納簿에는 물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通帳하고 元帳하고 맞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監査반을 적어 監事
 한테 다 말씀드렸지만 이문제는 어떻게
 좀 制度的으로 根本的으로 해결하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 될 수 있는대로
 슬롯이러분들이 좀 협조해주셨으면 다음

이 누가 말은지 모르지만 다음 이 말을
복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金敬萬會員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慶市事關係나 이런 데 이借用을 볼 때
반드시 明記가 되기 때문이 그러한 計
算錯誤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대한 것은 말씀해주
시요.

○總務部長 高太仲 計算錯誤는 아닙니다.

通帳하고 現金出納簿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느 날짜에 얼마를 내
 주었는 데 그것이 通帳에는 記載가 안되
 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數字가 틀리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設長 金鎮基 지금 決算에 대해서 의
 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문 없습니까?

○ 鄭源道會員 決算數值에 있어서 는 이상
 이 없다고 하니가 承認하시는 것을 前

提로 하는데 지금 總務部長이 말씀하시
 는 記載에 있어서 記載해도 관권을 것
 으로는 저희는 아는 데로 그것을 알므로
 집행하시는 분에게 附帶條件를 붙여서
 承認을 했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支出과 收入의 행위를 帳簿
 를 中心으로 해서 하도록 해나가는 것
 이 지금 複式도 아니고 單式經理이니까
 넣는 것은 넣고 빼는 것은 빼는 것으
 로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

은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실 있다면은 양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附帶해서承認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鎭基 答弁하세요.

○ 總務部長 高太仲 제가 워낙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가지로 실수가 많았읍니다.

그러다 慶尙道에서 나가는 돈이 저희
 預算項目에는 리금 올라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하는 見解差異가 될
 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 할 적
 에는 帳簿에 올리는 伝票 말고 金銀出納
 簿上에 올리는 것은 預算歲出項目에 들
 어 있는 것에 한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은 것은 伝票에만 記載
 하고 帳簿에는 記載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楊澈在/會員 저도 한번 總務를 맡아
본 경험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處理를 이렇게 부락하고 싶습니
다.

複式簿記에 있어서는 預算上의 現金을
어떻게 썼다 過拂이 됐다 하는 것이
다 表示가 되지 마는 이 單式으로서
表示가 안 되니까 現金出納簿에는 通帳
날짜에 비해 배진 날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借用証臺帳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慶尙事臺帳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監査받을 때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 案을 通過할 것
 에 同意합니다.
 ○金敬萬會員 決算報告 나온 데 보니까
 만 項目은 予算額에 비해 상당히 줄
 어들고 있는데 여기 雜收入項을 보니까
 4배가 넘도록 잡고 있습니다. 이 項目

에 대해서 算編成이 잘 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部長 高太仲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雜收은 지금까지 저희가 昨年에 2萬
 5,803 원으로 잡은 것은 銀行에서 들
 어온 利子하고 速記料金表를 팔고 했을
 때 들어온 것이었는데 이것이 10萬8,000
 원이 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協會를

運營하는 과정에서 . 결실하게 느끼는 것이
 財政自立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좀 모았어요. 한 100 萬
 원을 모아서 積金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3 月 從부터 11 月 까지 銀行에서 받은 利
 子입니다. 이것이 8 萬 3,000 圓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從부터는 계속해서 雜
 收入에서는 이 정도로 收入을 우리가 예
 상해서 잡을 수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鎮基 또 質問 있습니다?
 이 計數에 對해서는 監事가 異言없다
 고 하면서 의견을 여기 한 것이 상당히
 重要한 문제같아요.
 제가 보기에 는 우리도 이제 規模가
 來年度 預算이 한 300 萬 원 정도를 운영
 하는 그러한 規模가 되었으니까 經理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이번 總會에서 監事가 여기 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伝票도 一目瞭然하게 되
 어 있지 않고 또 帳簿하고 現金通帳하
 고 出納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른 틀게 되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승계를 한 것처럼 그러한 인상이 됩니
 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하니
 까 앞으로 理事陣에서는 지금 監事가
 지적한 것을 그냥 흘리지 말고 그런
 것을 어느정도 改善해가지고 묘다음 總

습이 서는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이 문제를提起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決算에 대해서 더이상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76年度 決算은 承認된 것을
 宣布합니다.

9. 1977年度事業計劃 및 予算案承認

○ 叢長 金鎖基 다음은 1977年度事業計劃 및 予算案承認을 上程하 겠읍니다.

事業計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叢長! 하는 이 있음)

말씀 하세요.

○ 姜宗遠 會員 지금 理事長님께서 事業內容을 설명을 하실 모양인 것 같습니 다마 는 대강 보니까 前年度하고 數字上에 약간 差異가 있지 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을 좀略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計敎說明은 省略하고
바로 다른 問題點을 設長께서 물으셔
가지고 異設가 없으시다면은 바로 通過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異設없습니다. 하는 이 잇음)

○ 設長 金鎖基 來年度事系計劃과 予算案
도 다 마한가지입니까?

○ 姜宗遠會員 에 그렇습니다.

○ 訖長 金鎮基 그러면 事系計劃案과 予
算案에 대해서 설명을 省略하자는 애기

에 대해서 異訖없습니까?

(異訖없습니까. 하는 이 잇음)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하는데 異訖없
니까?

○ 林來炫會員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에 會員福祉에 대한 事業

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具體的인

方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添加해서 通過시키라는 前提가 되면 通過시키는데 同意하고 그렇지 않으면 同意를 保留하겠읍니다.

○理事長 崔錫模 저희가 물론 會員福祉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定款에는 規定이 없읍니다.

전에는 있었는 데 이 福祉活動關係가 削除가 됐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76年度에도 이러한 係系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권이 여를 들어서 말씀하라고 하면
 저희 速記手 크이 8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만에는 職級別로 調整해 달라
 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國會速記職만 引上된
 것이 아니고 다른 技術職 또 一般職들
 도 조금 引上되었습니다. 마는 그 過程은
 상당히 副會長님이나 저희 理事陣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 事務處이 1案 2案 이렇게

나왔었는데 / 案에는 速記手當 自体가 아
예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 要路에 저희가 陳
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도 노력한 것이 백%의 成果는 못 됩
니다 마는 速記手當이 좀 올라갔고 또
法院關係로 姓名이 進出되어 나간 것도
協會에서 전혀 傍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體育^大會라든지 기타 會員의

福祉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비록 定款
 에는 없고 事業計劃 에는 없을 망정 노력
 은 했읍니다 마는 원채 부족하고 제
 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任員을 떠나서 단순히 會員
 이 된다고 하더라도 會員全體의 福祉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힘껏 노력을 하
 겠읍니다.

○ 叢長 金鍾基 지금 理事長이 얘기하
 는데 우리가 佐興團體 創

호 당시에는協會 目的에 그것미 들어
 가 있었어요 그런데 社團法人으로 될
 적에 文公部의 承認을 받은 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2층의 權益擁護를 위한
 團體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認定이
 안되게 되어 있었읍니다 순전히 文化團
 體로서 文化를 위한 事業에 貢獻한다는
 그러한 目的을 가진 것만이 社團法人으
 르서 認定이 될 수 있다는 社團法人
 認可에 대한 準則이 있었어요 그래서

社団法人 認可過程에서 2 것이 削除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金基英 會員 氏, 文公部 關係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한 것은
 執行部에서 실시할 일을 할 수 없을까
 요
 우리 速記協會라는 것이 會員 福利向
 상을 제외한 다른 速記文化를 보급하는
 중차대한 문제도 있지만 速記人들의 福
 利增進問題를 1차로, 안할 수도 없기 때문

문제 이러한 문제를 速記協會가 해야
한다. 内部的인 決議는 있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 議長 金鎭基 그것을 事業計劃에 넣어
서 文公部의 承認을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總議의 決議를 다가 理事會
에 任務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요
그 의견 없어요?

○ 金敬萬會員 決算書를 보니 各級學校
및 社會團體에 速記普及를 위해서 나가

는 분 들 은 위 한 費 用 이 3,600 원 밖 에
 執 行 이 만 되 었 습 니 다 이 것 은 2 사 람 들 의
 1 年 등 안 의 交 通 費 도 만 되 었 을 텐 데 금 년
 에 도 똑 같 은 형 태 로 ^案 세 워 놓 은 것 같 습
 니 다

다음 번 에 理 事 陣 이 구 성 이 되 면 速 記
 員 들 은 위 해 서 나 가 는 분 에 게 최 소 한 의
 經 費 은 支拂 되 어 야 된 것 으 로 알 기 때
 문 에 그 런 데 에 각 별 한 신 경 을 써 주 셧
 으 면 좋 겠 습 니 다

○ 議長 金鎭基 그러면 다음 理事陣이
 신경을 써주세요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1977年度 事業
 計畫과 予算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을 하고 원안대로 通過시키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77年度 事業計畫과 予算案은
 承認된 것을 宣布합니다

10. 定款改正의 件

○ 議長 金鎭基 다음은 會場에 의해서

定款改正의 件을 上程하겠읍니다

定款改正에 대해서 理事會에서 改正案

이 나와있읍니다

이 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주세오

○ 理事長 崔錫模 文化公報部令 第53條에

의거한 本協會 定款改正案을 說明드리겠

읍니다

(定款改正案 朗讀)

(油印物은 淸에 실음)

○ 議長 金鎭基 定款改正案에 대해서 지
 금 提案說明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文化公報部令 第53條 程田
 法人 定款準則에 依할 것 같은면 文化公
 報部의 認可를 받은 程田法人은 會長制
 은 전부 廢止해 가지고 理事長만 두어서
 理事長 중심으르세 모든 것을 운영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文化公報部의

準則은 그대로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
 으면 理事會에서 決定한 대로 文化公報部
 의 準則을 무시하고 우리가 종전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總會에서
 일단 決定을 해야 됩니다
 理事會에서는 會長制를 採擧하기로 決
 定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렇게 될 경우
 에 가령 文公部에서 너희는 文化公報部
 의 準則대로 履行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財團法人 認可를 取消한다든지 여 때

한 措置가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당
 시 綏恤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우리의 태도를 취하기로 하고 우선은
 종전대로 하자는 것 같습니다
 定款改訂의 件에서 중요한 것으로 그
 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綏恤
 에서 決定을 해야 좋겠습니다
 ○李龍洙會員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
 습니다

우리 협회가 매당초 社團法人으로서
 文化公報部의 認可를 받게 된 勸業은
 公法人이 됨으로써 어떤 國家的인 惠沢
 이랄지 社會的인 信賴度라 할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協會 運営問題라든지 여러
 가지가 文公部에서 惠沢 받는 것도 없
 이 상당히 어떤 規制만 받는 그런 결
 과가 되어버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
 어 보고 싶은 것은 任意團體로 있는 경우

와 社団法人으로서 계속 存続되었을 때
의 長短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 諷長 金鎭基 한마디로 答復하기가 어
려운 趣向은 하셨습니다

長短점은 여러분들이 爛音詩諷을 해보
시지요

○ 鄭源道會員 社団法人을 제일 먼저 拳
論했은 적에 제가 일을 말아보았기 때
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社團法人에 뜻을 둔 것은 각
 社團法人에 政府로부터 補助금이 있었음
 니다. 그래서 살림이 쪼들리는 우리 협
 회가 會費만 갖고서 事業을 하다 보니
 가 여러 가지 經費面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일이 있어서 補助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읍니다.
 그 다음번에 다 아는 문제가 워낙 하
 면 類似團體의 協會라는 것은 누구든지
 在費로다가 만들 수 있읍니다. 그래서

좀 더 抵抗力이 있고 公信力을 갖고서
 우리가 社會에서 發言權을 가지고 活動
 을 하려면 어디까지라도 法人体의 組織
 을 가져야 됩니다

또 조금전에 法人体로서 갖는 利益보
 다도 우리에게 주는 拘束力이 너무 많
 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
 령습니다 어는 때는 귀찮을 정도의 지
 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는 그런 것은 執行陣에서 잘 解消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불
 적에 없는데 것보다는 法人체로서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 部長 金鎭基 아까 前提로서 제가 말
 씬 드렸는데 어때요 理事회에서 결정한 대
 로 現体制대로 일단 해가지고 文公部에
 다가 일단 통보를 해서 그다음 文公部
 의 反應을 보아서 하도록 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그 大前提下에서 理事會에서
 改正案이 나왔는데 그 主要骨子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가지 하나하나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종습비대하는 이 있음)

그러면 主要骨子는 (가) 副會長을 1人
 으로 함 (나) 任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함 (다) 監事의 職務을 強化함 (라) 議決
 除斥事由를 新設함 (마) 事業計劃書 등의

報告를 新設함 (바) 第 8 章 事務局 削除
함

이것이 骨格이니가 그것을 通過시키는
방향으로 하지요

○姜宗遠會員 한가지 의견이 있음니다

다른 야기는 그만두고 任期問題에 있

어서 任期가 準則에 의해서 4年으로

되었는데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의견입

니다

○議長 金鎧基 順序대로 해나갑시다

첫 번째 회숙장을 1인으로 하는 것
 현재는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인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세요

말씀 없으세요?

(말씀 없으십니까에 대해서는 이 있음)

그러면 가령은 통과된 것을宣布합니
 다

다음에 "나" 조항의 임기를 현재 2년
 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하는 것

입니다

○姜宗遠會員 2대서 우리가 어떤 車馬
 費를 주는 것도 아니고 佐員들이 사신
 품인데 있어서 報酬도 받지 않고 4年
 동안 뛰다니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面에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
 도 理事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佐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하는 것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대서 이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諫長 金鎮基 또 말씀하세요

○ 柳智永 會員 2년으로 하면 文公部 準
則에 違背되는 거 아닙니까?

○ 鄭源道 會員 지금 文公部에서 가장 重
點을 두고 있는 것이 스텝이 理事長의
는 것 하고 任期 4년으로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다 빼면 文公部
의 요구를 하나도 듣지 않는 결과가

되 기 때 문 에 구 관 하 지요
 姜 會 員 에 대 해 서 反 對 意 見 을 가 저 서
 미 안 합 니 다 마 는 어 떠 한 「 키 · 포 인 트, 하 나
 를 관 찰 하 기 위 해 서 이 것 은 4 년 으 로
 하 고 會 長 制 度 만 은 우 리 가 관 찰 시 켜 나
 가 는 것 이 좋 겠 어 요

○ 金 基 英 會 員 定 款 에 는 4 년 으 로 해 두 고
 每 年 總 會 에 서 자 진 해 서 2 년 만 에 辭 退
 하 는 형 식 으 로 해 나 가 면 되 지 않 겠 음 니
 까

○ 訖長 金鎮基 그 것이 運當의 妙입니다
 折衷案으로 써 좋은 야기인데 다른 反對
 意見 없읍니까

○ 姜宗遠 會員 運當의 妙를 믿고 양해하
 겠읍니다

○ 金謙善 會員 折衷案 그것 안됨니다 2
 年만에 辭退할지 안할지 모른니까 定款
 은 4年으로 믿고 나가지요

○ 訖長 金鎮基 또 의견을 말씀해 주세
 요

○李 鍾 燾 會 員 可 及 的 이 면 監 督 官 庁 의 意
 思 를 무 시 하 지 않 고 나 가 는 것 이 좋 을
 것 같 습 니 다 監 督 官 庁 의 어 떤 指 示 事 項
 에 의 해 서 우 리 가 定 款 은 改 正 은 하 는
 마 당 에 있 어 서 큰 것 은 다 어 긴 다 는
 것 은 우 리 가 大 韓 民 國 法 下 에 서 살 면 서
 무 리 인 것 같 습 니 다

○ 副 長 金 鎭 基 또 만 쓰 하 세 요

○ 李 德 九 會 員 4 年 은 너 무 긴 것 같 습
 니 다 4 年 씩 2 年 宿 報 酬 3 年 하 다 는 것

은 말이 안 됩니다. 金基英 會員이 말한
 바와 같이 運營의 費를 살려가지고 2
 년에 한번씩 改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議長 金鎭基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定款에 내가는 4年으로 해 놓고
 다만 院會에서 이러한 論議가 있었다
 하는 것은 任員들이 認識을 해가지고
 그러한 運營의 費를 살리는 方向으로

양심에 맡기고 이 案대중 하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러한 論議가 있었다는 것은
상기시키면서 「나」쪽을 通過시키겠습니다
다음 「다」 監事의 職務를 強化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理事長 崔錫模 監事의 職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定款에서 監事는 「協會의 財産事

項의 監査 手帳 理事會의 運營과 2
 業務에 관한 事項의 監査 手帳 前 2 号
 의 監査 結果를 總회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였는데 이번에 準則에 의해
 서 3 号가 改正 되었읍니다 「 1 号 및 2
 号의 監査 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處
 이 있음은 究見한 때에는 理事會에 2
 是正을 要求하고 總회 및 文化公報部長官
 에게 報告한다
 4 号는 新設되는 項입니다 「 3 号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理事
 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號 이것도 新設되는 項입니다 「本協
 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2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監事가 總會에서 아까 指摘을 했읍니다
 라는 그 指摘事項을 文化公報部長官한테
 監事가 報告하게끔 되어 있어서 監事의

職務가 상당히 強化되었읍니다

○鄭源道會員 監事가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면
여기입니까?

○議長 金鎭基 監事가 會長에게 召集要
求를 하는 것이지요 會長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지요

여기에 별 異議 없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은 "라" 議決除斥事由를 新設하는
 것 이것을 說明해 주세요
 ○理事長 崔錫模 이것은 準則에 의한
 것은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그 定
 義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
 르대로의 생각은 任員이 자기 자신에 관
 한 일이나 직접 利害에 관계되는 일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參席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解釋을 하고 싶습니다

○姜宗遠會員 渾則에 따라서 한 것이니
 가 별異議가 없읍니다 넘어가지요
 (종슈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金鎭基 그러면 "라"項에 異議가
 없으므로 通過시키 겠읍니다

다음은 "마"項을 설명해 주세요

○理事長 崔錫模 이것도 新設되는 條項
 임니다

다음 해의 事業計劃書 및 預算書와 당
 該年度의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

計年度 終了後 2 月以内に 財産目録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이삼입니다
 ○ 議長 金鎭基 이것도 準則의 規定事項
 인 것 같습니다

별 異說 없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事務局 削除 이것은 準則에 의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을 왜廢止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理事長 崔錫模 現行 6章에 執行部

署가 있는데요 執行部署라 하면 원래는

事務局도 構成되어가지고 > 事務局에서

各種의 指示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합니

다 그런데 저희 協會 立場에서는 改正

案 63條에 의해서 本協會의 業務를

理事가 兼任할 수 있어서 事務局이 필

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을 削除하고 그 業務는 執行部署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條文을 整
 理한 것입니까?

○ 議長 金鎭基 事務局 制度가 종전에
 있었는 데. 이것을 廢止하자는 것입 니다
 異議 있습니까?

(없음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主要骨子로서 나와 있는
 것은 다 되었는 데 이 이외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理事長 崔錫模 執行部署 3 號의 「宣傳部」를 「渉外部」로 字句를 바꾸었습니다 2 위에는 별 것 없습니다

○李東一會員 第 3 條 5 號의 「外國語部」 이것은 語學關係部署 같으니 「速記」를 넣어서 「外國語速記部」라고 하든지 너무 긴 것 같으면 「國際部」라든지 어떻게 用語를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林來炫會員 外國 速記界와의 交流実績 이라든지 특히 外國語部의 事業現況 이

러한 것이 있으면 이 차제에 말씀해 주
시기 큰 바랍니다

사실상 外國語部라고 있어 가지고 1年
에 講習이나 두 번 하는 차에 다른 事業
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월이면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
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

에 이런 것 등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 가
되어서 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떠한 部署에 병합을 시키는 方案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쭙어 보
는 것입니다

○ 議長 金鎭基 지금 定款改正過程에 있
어서 31條 3項 「宣傳部」라는 것은 「渉外部」
를 고치자는 理事會의 案에 대해서 異
議 없습니까?

(「없음」이다 하신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된 것으로 하겠음
니다

그 다음에 5 북에 가서 外國語部에
 대해 가지고 李東-會眞은 우리가 外國語
 를 하는 것이 마니고 速記를 하는 것
 인데 「外國語部」라는 것이 좀 功績이 좋
 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또 林來
 炫會眞은 「外國語部」가 지금까지 어떠한
 運當을 해왔는가 도대체 그 實績이나
 말고 심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 차라리
 이것을 廢止하든지 다른 데를 병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으

니까 이것을 지금 정식으로 改正案으로
 서 취급하기 이전에 그동안의 外國語部
 의 実績報告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
 을 가령 外國語部가 우리가 해야 될 事
 業에 나와 있는 데 큰 外國 速記界와의
 速記文化의 交流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회원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은니까
 外國語部長이 설명을 해주세오

○ 外國語部長 盧英民 外國어의 速記文化

交流에 관한 것은 지금 크게 진척되는
 것은 없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은 美國의 NSRA 全美國速記士協會에
 서 나오는 雜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
 도 그 이외에는 없고, 또 우리나라의
 大韓速記協會 外國語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73年度
 의 A P U 總會 또 74年度의 A P U 理事
 會 등에서 우리 外國語部의 會員들이 다
 일을 했읍니다 옛날에는 外國에서 速記

士를 데려와가지고 했는데 大韓速記協會
 에 外國語部가 생긴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 손으로 이러한 國際會議을 담당했
 는데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 柳智永會員 지금 현재 우리 外國語速
 記하면 實質的으로 英文速記 하나뿐인데
 차라리 「英文速記部」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 金致元會員 저희 회원이 國際會議에

나가서 일을 했다든 말씀을 듣고 보니
 가 英文速記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저희 總회에
 한번도 제가 나온 것을 못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會員인가를 알고
 싶고요

으 그분들에게 會員資格을 준다면, 한
 글速記의 경우 1. 2級은 되어야 會員
 資格을 주는데 英語速記의 경우도 1.
 2級의 資格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

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주고 있
 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 자격을 줄 때에 자격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몇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령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라면 그분들을 우리가
 믿을 때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
 령지 않고 우리가 좀 의아한 눈초리로
 볼 때에는 疑問符이 많으니까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外國語部가 기대했던대로 된
가 또 말으로 별 기대할 價値가 없다면
면 該部에 병합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고 생각이 됩니다

○ 李龍洙會員 아까 李東一會員께서 外國
語部의 名稱을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
는 2건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論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삼하게
外國語部 자체를 廢止시키자는 方向

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大韓速記協會가 제10회 定期總會지만
 아까 成員報告할 때 보니까 會員이 昨
 年度에 154名에서 148名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애당초 이協會를 構成해가지고
 運營해나가는 하나의 커다란 目的이 速
 記界의 저변 확대인데 그렇다고 하면 무
 슨 資格이 1. 2級以上이어야 正會員이
 다 무슨 公共團體에 5年以上 勤務해야

만
 正會員이다 하는 이야기를 떠나가지
 고 現段階에서는 우리協會가 包容力을
 갖고서 等級 級數로는 5級이 되는 速
 記士가 있더라도 그 사람등을 正會員으
 로 하는 方法을 강구해서 全國 坊坊曲
 曲에서 그래도 우리 速記協會를 알고
 總會때 參席을 못한다면 電文이라도 보
 낼 수 있는 이러한 團體를 成長할 때
 까지는 우리가 「外國語部」를 廢止하자는
 論議는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

다 다만 活動이 미약하다고 하면 우리
 회원들이 심하게 가지고 그 부분을 支援을
 해주어서 育成을 시켜주고 發展시켜 나가
 는 것이 우리 大韓速記協會의 앞으로의
 發展的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名稱만 어떻게 改正을 하자
 면 改正을 해야지 廢止 云云하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립니다 하는 이 있음)

○李德九會員 廢止하자는 것이 아니고

協會에 部署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外國語部」를 활동 여하에 따라서 價值
 性이 없다면은 다른 部에 흡수시켜 가지
 고 간소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現實性에 力을 두고 일을 해야지 형
 식에 치우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 李龍洙會員 저는 어디까지나 協會發展
 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인데 現實的인 문제를
 를 論한다고 하면 英文速記部가 있음은

2 해서 大韓速記協會에 대해는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녹음講習을 할
 때에도 英文速記部의 녹음講習 受講料
 收入이 國語速記의 受講料보다 많은 것
 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그 동안 外
 國語部가 速記協會에 이익을 주었으면
 주었는지 被害되었던 일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發展을 시켜 보자
 하는 意圖에서 말씀은 드렸던 것입니다
 ○ 議長 金鍾喆 또 의견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읍니다

먼저 外國語部를 廢止시키자는 正式案
은 없지요? 누가 案을 提案한 것이
없읍니다

○李德九스승 제가 이렇게 勅諭를 하겠
읍니다

「外國語部」를 「渉外部」에다가 합쳐가지고
그 機能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正式 勅
諭합니다

○理事長 崔錫模 잠시 제가 補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外國語部에는 현재 會員이 正級
이 6 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假
로 講堂을 하고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收入이 協會에 對한 公租를 賦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名稱問題로 「外國語部」가 좀 미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는 저희도 第 3 次 理事會에서 이 名稱을
가지고 理事들이 論議를 했습니다 그

때 決定을 보기를 이경게 몇년 동안 사
 용해 왔으니까 外國語部를 그대론 두자
 앞으로 日本語 中國語速記도 할 수 있
 고 여러 나라 말 速記를 배울 수 있
 지 않느냐 해서 그대론 두기로 했읍니
 다

그리고 李德九씨에게서 槓桿가 너무
 많다는 말씀은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總務·財政 이경게 定款에 나와 있읍니
 다 마는 실지로는 總務·財政은 한사람이

결해서 보았읍니다 그래서 部署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 결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 다

저희 理事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 드렸
읍니다

○ 議長 俞錫基 「外國語部」를 廢止하는
動議를 한 것입니까?

○ 李德九 先生 廢止가 아니라 「涉外部」하고
합쳐가지고 槓構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
것다는 것입니 다

○ 諛長 金鎭基 지금 李德九會員의 勳詔
 에 再請이 있음니까? 再請 없죠? 없으
 면 勳詔成호이 안됩니다

○ 李東一會員 「外國語部」를 國際部로 改稱
 할 것을 正式으로 勳詔합니다

○ 諛長 金鎭基 再請있음니까?
 이것도 再請이 없어서 成호이 안됩니
 다

○ 柳智永會員 英文速記部를 改稱할 것을
 正式으로 勳詔합니다

○徐吉泉會員 英文速記部로 하면 日本語
 速記部도 나을 可能性이 있으니까 現行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正
 式으로 勸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敬萬會員 「外國語部」보다 外國部로 하
 면 우리가 다른 日本語速記라든지 中國
 語速記라든지를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
 으니까 「外國部」로 할 것은 勸諭합니다

○金基英會員 우리의 事業 目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事業自体의 解釈에
 있어서 速記文化속에는 한글 速記文化만
 있는 것이 아니고 英語 日語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 「外國部」로 한 것에
 再講합니다

○ 諛長 金鎮基 外國部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이 되었습니다

○ 鄭源道 會員 理事회에서 論議가 되었을
 기에요 外國語部하고 外國部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理事長 崔錫模 그 때 당시에 理事會에
 서 外國語部를 外國部나 國際部나 英文
 速記部나 여러 가지 말이 있었었는데 단순
 히 外國部하면 너무 방대한 것 같고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마는 저희 理事들은
 그 때 큰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때
 큰 두었읍니다

○副長 金鎮基 外國語部도 마땅치 않지
 만 外國部도 마땅치. 알은니까 현재 대 큰
 두자는 것 같은데 ...

○金基英會員 「外國語部」하면 따르 하는
 事業이 나왔어야 되겠는데 速記文化普及
 을 위해서는 안했지 않아요
 外國部가 國際的인 것을 다 管掌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記長 金鎮基 그러니까 林來炫會員이
 처음에 2 문제를 얘기한 것은 外國語
 部가 2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는
 나 會員들이 모르고 있다 「外國語部」 活
 動狀況이 1年만에 한번씩 나오니까

우리 의 速記 講에 도 좀 실린다든지
 外國 速記 界와 交流한 実績이 몇 회라든지
 美國 速記 界의 現況이 어떻게 돌아간 다
 든 지 國際 速記 聯盟이 어떻게 된 다
 든 지 이 런 데 에 대 한 무엇이 좀
 스기 講에 라 도 가끔 한번씩
 나왔 으면 外國 語 部가 이러
 한 일 을 하 는 구 나 이 렇 게
 민 식 할 텐 데 유 감 스럽 게
 그 런 것 이 하나 는 없 는
 것 같 아 요 그 러 니 까 外國 語 部
 의 여 태 까 지 의 역할 이 라는
 것 이 資料 講習 하 는 데 관여 한

역할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그런
 責任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우선
 廢止하는지 뭐냐 하는 것은 일단 案이
 成立이 안되어서 廢止問題는 여기서 論
 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이 論議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外國語部가 되느냐 外國部가 되느냐 아
 무든 여기서 改正되든지 또는 안되든지
 앞으로서 理事陣에서는 좀 처 外關係
 外國과의 交流關係 이러한 것을 좀 환

박히 해가지고 會員들에게 國際速記 부

대를 좀 소개를 하고 이러한 活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總 會 精 神으로 보아서 새 理事陣에서는

그러한 뜻은 받들어서 하도록 하고 우

선은 지금 部署名稱에 대해서 外國部로

하자는 動議는 正式으로 成 호이 되었습

니다

거기에 反對 意見이 있습니까?

○ 李德九 會員 外國部라고 하면 概念이

너무 모호하고 尤大해서 좋지 많은 것 같습니 다

○ 諒長 金鎖基 反對意見이 나왔어요 더 討論하십 분 願否?

그러면 찬상 表決을 해야 되는데 지 금 在席이 어떻게 되나 세어보세 요

○ 總務部長 高太仲 成員이 됩니 다

○ 諒長 金鎖基 어떻게 通過될 것 같지 않은데 撤回 만하겠어요

○ 金敬萬 成員 제가 撤回하겠습니 다

○ 議長 金鎭基 감사합니다

그러면 外國語部에 대해서도 그대를
두고 總務部하고 財政部는 統攝하는
것이 아닙니까 짐식으로 勸諭를 하시죠

○ 金基英會員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反
對意見이 없으면 滿場一致를 하죠

○ 理事長 崔錫模 總務部하고 財政部 2
것이 그것인데도 實務面에서 이것은 합
치면 多數가 전부 달라지고 文公部에
對比較를 들어가야 하는데 可能하면 이

대로 봐주시고 실지 運營에 있어서 두
 部를 한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해주시
 면 좋겠읍니다

○ 議長 金鎭基 지금까지 결직을 했는데
 구태여 들로 한 必要가 있는냐 이런
 얘가지요

○ 理事長 崔錫模 저희가 昨年 預算이 280
 만원이고 今年度 預算이 380 萬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망의 80 年 代에
 가면은 저희 裨益이 아마 600 萬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면은 專一的으로 여기에 매달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現 理
 事 陣 생각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諛 長 金 鎮 基 그러면 撤回하겠습니까?

○ 金 基 英 委員 좋습니다 撤回하겠습니다

○ 諛 長 金 鎮 基 그러면 철회된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다
 通 過 했는데 이 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鄭宇鎔會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것
 은 꼭 해야 되겠다든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5條에 名譽會員 正會員
 準會員하고 되어 있는데 이번 改正案에
 서는 資格審査에 대한 事項은 規程에서
 定한다, 하는 것을 削除하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準會員이
 없읍니다 準會員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도
 準會員으로 加入을 안해오 해보아야 별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에는 準會員制度
 를 없애 버리고 正會員만 두되 正會員에
 도 여기에 보면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
 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者로 되어 있는
 데 그럴 것이 아니라 準會員과 正會員
 은 합쳐 가지고 規定을 조금 바꾸어서
 加入 速記法式을 이수한 者로서 몇級以上
 하는 資格制限을 두는 것보다 「履修한
 者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加入할 수
 있다, 이렇게 正會員과 準會員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는냐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수원은 「本協會의 규
 則에 의한 資格審査에 合格된 者」로 되
 어 있고 準會員은 「本協會에 加入된 速
 記遠式은 습득한 者나 습득중에 있는
 者中 理事會 決議로써 準會員의 資格은
 認定받은 者」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습
 併을 해서 정리할 한다면 「資格審査에
 合格된 者」가 아니라도 本協會에 加入

된 速記法式은 습득한 者나 습득 중에
 있는 者中 協會의 諸般規定을 遵守한
 者로서 理事會의 認準을 받은 者, 이런
 式으로 고쳐가지고 2項 3項을 統合시
 켜오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
 ○理事長 崔錫模 勸諭하시기 전에요 「資
 格審査에 관한 事項은 會規로 定한다」
 이것을 削除했는데 왜 削除했느냐 하면
 제의를 第38條에 「規則」이라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會規」로 하였읍니다 이렇게 하였는
 데 資格審査만 유독히 條文에 넣어서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은 會規로 定한다
 이렇게 두니까 보기에 나빠서 뒤로 돌
 렸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
 은 저희가 第3次理事할 때 1級 合格者
 만 正會員으로 하지 말고 旁으로 會員
 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서 資格審査委員회에서 會規로 이렇게
 이렇게 고치는 방향으로 하달라 이런

것이 引繼事項으로 넘어갔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理事會에서 論議된 것은 꼭
 正級만 하지 말고 國家 또는 公共機關
 이나 이런 데서 速記業務에 종사하는
 이런 사각은, 1級이 되려면 상당히 힘
 드는데 앞으로 會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넣는 것이 어떤가를 論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 주
 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鎭基 會員의 入會資格規定을

여기에 넣자는 것이 吧

○ 鄭宇鎔 會員 우리들 會員이 적지 않습

니까? 社団法人體라 해가지고 會員棟에는

準會員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나.

이 條에 是 이 規定이 필요 否 知 否 是

나 正會員과 準會員을 한테 합쳐 가지고

1.2 級 資格은 안 가진 하 는 人 員 를

배 처 가 지 고 練 記 를 아 는 사 랑 이 우리

協會 會員으로 들어올 때에는 正會員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門戶를 開放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 議長 金鎮基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은 會員의 資格을 갖다가 制限하는 문제는 會規로 定하는 문제니까 여기 定款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資格審査는 會規에 定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論議해야 될 問題는 準

會員을 없앤다는 문제가 지금 論議의
 焦點이 되어 있는 데요 準會員 문제를
 定式으로 動議하겠습니까?

○ 鄭宇鎔 會員 動議하겠습니다

○ 楊澈在 會員 제가 再請하면서 조금 添
 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準會員을 없애 버리면 正字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養成所에서 후
 業하고 나가는 사람 또 學院에서 배워
 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速記에 趣味가 있어가지고 職場을 가정
 다든지 하면은 서로를 人脈이 통해
 그런데 速記를 級數에 묶어서 어떻게
 잔다 그리니까 서로 딱 斷絶이 되거든
 오지도 오늘 저 同期가 바둑종 두자
 그래서 時間이 없습니다 그리니까 왜
 그리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 速記協會
 總會가 있습니다. 그리니까 그리냐! 고
 했지만 거기서 그대로 斷絶이 되고 말
 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社會生活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速記를 배우고 卒業한 사람이라면 이
 는 정도는 理解를 하는 사람이니까 社會
 的인 地位라든지 거기에서 對한 熱意가
 大인 하든지 할 때에는 좀 緩和해서 그
 사람들을 會員으로 採用할 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에서 用請 発言합니다.

○ 議長 / 金鎮基 또 討論 하세요

○金敬萬會員 事先 그런 式으로 따지다
 보아 總會라는 것은 每年 열월 두가
 있는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읍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大部分
 會舍를 기렸거나 會舍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다른 機關에 勤務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자리에 參席을 했는데 門戶를
 봉진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는 總會 이
 場所에 資格規定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것 입니다. 나는 準會員으로 해서 會員
數를 늘리면 실제로는 그 會員이 加入이
되어가지고도 總會에 出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
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申告開放하는 데에는 費
戚이지만 會員만 늘려서는 나중의 協會
總會라든지 會費關係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
기의 대한 점을 좀 參考를 해가면서

다음 理事會에 넘겨 가지고 研究檢討 會
하는 것이 어떻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鄭宇鎔 會員 金敬万 會員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答弁이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協會規定을
遵守하는 者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어 會員規定欄에 會費納付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例를 들어서 지금의 正會員 資格審査

基準을 잦아보니까 英文速記에 대해서는
 2級 이상의 實力을 가진 者와 公共機關
 에 5年 이상 勤務한 者 이랑게 되어
 있습니다.

英文速記에 限해서 英語速記를 專業
 으로서 하는 者 이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法的으로 理事長에게
 依기를 한 者 이 있습니다하는...

그런데 準會員 正會員이 없이 會員하
 기 되면 會員이 얼마나 늘어날는지 懸

제 예기나 속안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일단 회원으로 加入한다면 協會의
 모든 準則을 遵守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으로서의 會費納付의 義務
 를 지는 것이요 모든 義務를 지기
 전에 會費를 내면서 그 사람이
 總會에 出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에는 크게 구애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會費를 안하면 회원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余敬万會員이
 걱정하는 문제는 그렇기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余海成會員 第5條의 名譽會員과 準會
 員도 會員입니다. 正會員과의 區分限界는
 總會에서 設法權을 갖는 것하고 會費納
 付의 差異^가를 있을 뿐 第5條의 1호에 있
 는 會員은 됩니다.

그러니까 余敬万會員이 말씀한 그 문
 제는 사실 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任員陣에서 좀더 檢討
해서 좋은 방향으로 研究하도록 하고
이대로 通過시키느 것이 좋은 것 같습
니다.

○ 議長 金鎮基 또 의견이 없습니까? 鄭
宇鎔 會員 어떻게 表決할까요? 準會員 柔項
은 廢止하나 안하나 아한가지니까 그래
는 두고 理事會에서 會規를 定할 적에
鄭宇鎔 會員이 얘기한 것을 참작해서
다음에 會員資格審査를 할 적에 그러한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는 것을 많이
 참작을 하시느 方向으로 하고 이것도
 撤回가 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있읍니다)하는 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理事會에서 제안한 社田
 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中修正案은 理事會
 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通過되었읍니다.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읍니다)하는 이 있습니다)

11. 任負改選

○款長 金鎮基 다음 順序는 任負選擧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定款이 改正 되었기 文公
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효력이 發生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任負選擧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것이 承認될 것을 前提로 해 가지고

이 定款에 의해서 任負를 選定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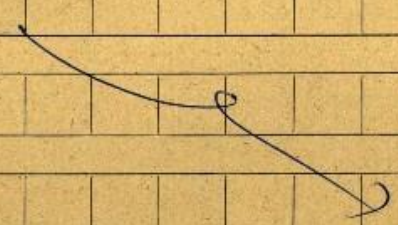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업무니까?

(「복합 업무니까」라는 이 말은)

그런데 任員進學의 進어가기 前에 제
가 身上 勞働을 止하겠읍니다. 停時肉
을 내서 양해해 주십시오.

승려에 對히 協會가 67년 1월의 停時肉
해 가지고 10 周년이 된



는 해입니다. 제가 71年度 定期總-會에서
 副會長이 되어가지고 만 5년이 경과되
 었습니다. 나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에게 누누히 說明할 필요도 없이 不
 幸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最近부터 連
 續에 몸담아가지고 能力도 없는 사람
 이 항상 여러분의 立場에서 서는 그러한
 位置에서 일을 해 왔는데 近來에 제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쳐가지고 저 나름대
 로 여러가지로 深思熟考를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좀더 활활하고 有
 能한 사람이 우리나라 建記畧의 草創期
 부터 발을 들여놓아서 나와같은 그러한
 位置에서 力割은 해 주었다라면 우리
 大韓民國의 建記畧가 좀더 많이 發展할
 수 있었~~을~~지 않았겠는바하는 이러한 自
 己反省도 해보고 또 公務員~~회~~으로서의
 나 和人과 建記人으로서의 내 입장을
 여러가지 面에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누누하고 같이 議論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혼자 여항을 잠도 못 자면서
 곰곰히 생각한 결과 이제 내가 여러분
 앞에서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라는^는指導
 者로서의 資格이 없는 存在가 되고 말았
 다는 것을 스스로 認定을 해 가지고
 먼저번에 理事會에다가 辭任書를 提出했
 습니다. 그런데 理事會에서 任期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會長과의 關係도 있고
 하나까 지금 副會長이 그만두면 總會에
 會長님이 안 나오시고 버리가지 問題도

있고 會長님에 대한 人壽도 아너고 하
 니까 會長님과 같이 1年期를 아쳐 주셨
 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서 너무 나
 호자 固執하는 것도 용족한 것 같고
 해서 意思를 撤回해서 오늘 다시 또
 司會를 지금까지 맡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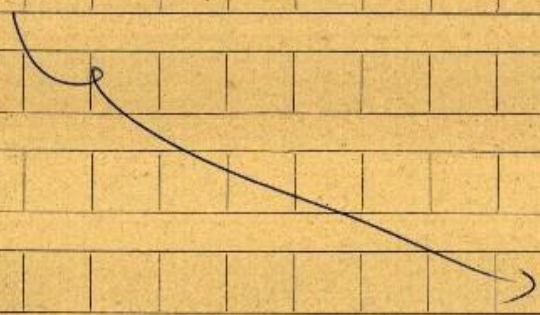
나 스스로는 항상 能力은 없고 無能
 하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速記人으
 로서의 使命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努力
 했지만 여러 會員들의 意思에 부응하는

副會長이 되지 못하곤 해서 自退할 뜻
 을 버지든 않겠으니까 모를 任實 逆掌에
 있어서도 다시 副會長으로 選出해 주실
 지 안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選出이
 되지 않으려 하여 여러분들께 간곡히 申論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副會長을 그만 두면은 제가
 얼마간 所感을 말씀드리면 이 協會가
 지은 10년이 되고 보니 資金도 이미 積
 蓄을 마친한 수 앞을 정돈은 어느

정도의 기본이 다져지고 앞뒤에 지름이

지



우리協會의 運營이라는 것이 國會事務
 處의 連結關係로 인해서 너무나 硬直되
 어 있어요. 課長이 항상 副會長으로서
 앉아 있고 理事長은 係長序列대로 하고
 또 看板이 事務處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總會가 事務處
 를 빌려서 해야 되고 午料講習의 接受
 도 事務處에서 하고 이렇게 너무나 事
 務處와 直接的으로 連結이 되어가지고
 協會運營에 상당히 硬直性を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理事會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제 우리 協會도 좀더 視野를 넓혀
 가지고 너무 事務處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協會施設을 바깥으로 해
 나가서 . . . 또 이번에 法院에도 여러
 분들이 가시고 했으니까 國會中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法院과 國會와 其他
 전부 합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事務
 處의 系線에 의한 硬直된 運營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활발히 뭔가 좀 體質을 改善해서 運營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時期가 尚早
 이지만 積立金 100 萬 원 정도가지고는
 도저히 獨立해서 運營할 수 없는 事情
 에 있습니다. 마는 그 形便대로 100 萬
 원의 積立金을 없애지 않는 方向에서
 어떠한 便法을 써서라도 일단 看板을
 서울 거리에 速記事務所 같은 것을 設置해
 서 활발히 해 보고 事務所와 일단은

直接的인 連結關係를 떠나 가지고 運營하
 는 것이 協會發展을 위해서 좋지 않겠
 으냐 하는 意見을 먼저 理事會에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意見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所見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最近에 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것은 利害당국者들이 계
 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誤解를 살 것 같
 은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우

리 協 會 가 어려운 處 地 에 直 面 하 게 되
 었 다 하 는 것 을 느 껴 서 여 러 분 께 제
 所 見 은 말 씀 으 리 면 . . .
 學 料 講 習 이 몇 몇 분 의 어 떠 한 자 기 의
 利 益 을 위 해 서 . . . 表 現 이 좀 不 足 한
 것 을 양 해 해 주 세 요 . 爭 奪 이 라 고 할 까
 꼭 자 기 가 해 야 되 겠 다 . 그 쪽 으 서 누 가
 하 면 안 되 겠 다 이 런 식 으 로 空 氣 가 흐
 러 가 는 것 같 아 요 . 제 가 副 會 長 을 하 면 서
 도 學 料 講 習 의 必 要 性 을 느 끼 고 단 그

동안에 摩擦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에 民間速記學院이 甚 維持하기가 어려
 워서 學院이 우리 協會에 依支해가지고
 그나마도 數十年間 維持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速記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副作用이 없는
 한 그대로 東邦速記學院에서 하는 것을
 별 異說없이 그대로 해 나왔읍니다.
 그동안 아마 一部에서는 너무 煩 法
 式에만 置重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여

기도 있었음니다마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速記學院 그것이라도 살려야지 그것을
 后援만 해 줄 것같은면 養成機關이 滅
 亡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뜻에서 별
 雜音없이 해왔는데 最近에 와서 들려오
 는 얘기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음력
 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
 은 여태까지 우리가 純粹하게 速記文化
 發展을 위해서 協會가 寄與하고 努力해
 온 우리의 여러가지 발자취에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分裂이 되고 서로
 로 좋지 않은 結果가 招來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어려운 問題點,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解結하셔서 誤點
 을 남기지 않도록 . . . 우리 協會가
 어떠한 利益團體도 아니고 어떠한 個人
 의 利益을 위해서 右往左往할 수도 없
 는 그러한 位置에 있고 하니까 그런
 問題決定過程이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까딱하다가는 여기서 커다란
 分裂狀態가 予見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
 려스러워서 물러나는 마당에서 여러분들
 에게 그러한 것을 조심하셔가지고 그런
 事態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付託드리고 제가 이상으로서 大韓
 速記協會의 모든 幹部職을 맡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協調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任員選舉에 있어서 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회는 지금부터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께서 臨時議長을 選出하시고 앞으로
 任員을 選出해 주십시오.

그리고 會長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決裁말으러 가서 再就任해 주실
 것을 付託드려가지고 承諾을 받았읍니다.
 그 뜻을 여러분께 아울러 전해 드리
 고 이상으로서 물러가겠습니다.

○理事長 崔錫模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게 될 줄은 모르고 . . .
 지금까지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회사를 꼭 해오셨음니다만 이렇게
 되었으니 任員改選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臨時 副會長을 選出하는 것이 順序일
 것 같습니다 .

○金基英會員 理事長을 臨時 副會長으로 推
 薦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申世華會員 鄭源道會員을 推薦합니다 .

(종습니다. 하는 이 있음)

○理事長 崔錫模 지금 金基英會員께서
 理事長을 臨時議長으로 하자는 案과 申
 世華會員께서 鄭源道會員을 臨時議長으로
 하자는 두가지 案이 있는데 어떻게 하
 면 좋겠어요?

○金永春會員 慣例上 司會者인 議長이
 不參時에나 有故時에는 右任者인 理事長
 이 대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理事長
 께서 司會를 봐 주실 것을 正式 動議

합니다.

(종습니다하는 이 말씀)

○理事長 崔錫模 그러면 申世華會員, 어떻게 하겠습니까?

○申世華會員撤回하겠습니다.

○理事長 崔錫模 그러면 제가 司會를 보겠습니다.

○臨時議長 崔錫模 여러분께서 아까 通過시켜 주신 定款 第9條에 會長 1人 副會長 1人 理事長 1人 理事 12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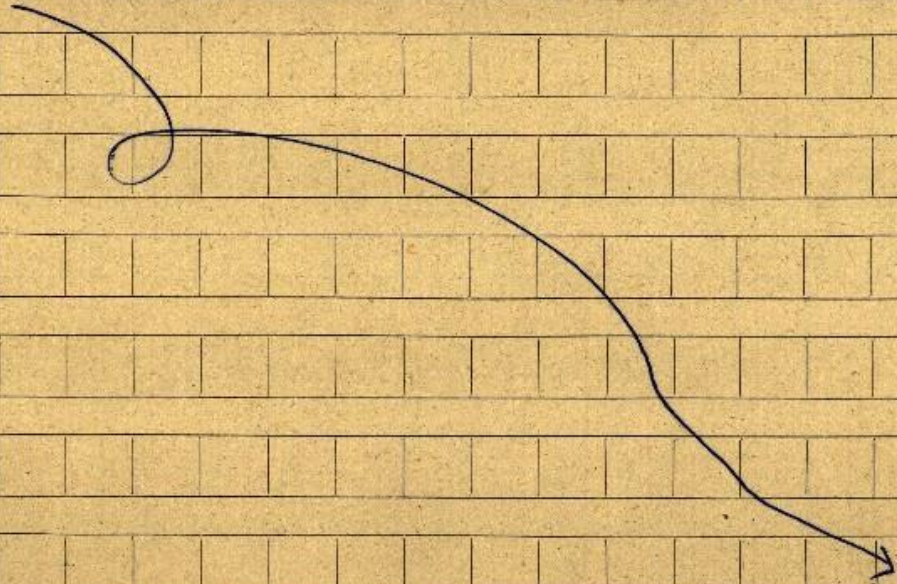
監事 二人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任員退出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尹炳直會員 지금 나누어 주신 油印物을 대강 훑어 보았는데 今期の 우리協會의 事業이 例年에 비해서 큰 變動없이 잘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또 協會發展을 위해서 執行部에서 많은 努力을 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아까 劉龍珪 專門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今期에는 우리

速記



하는 사건들이 항상 念願했던 各 部
 之間의 人事交流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速記人의 務
 業向上과 또 其他 여러 가지 등등을 위
 해서 애써 주신 金堯泰會長님과 또 會長
 님을 輔弼하신 前 金副會長님의 勞苦의
 一端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또한 來년에 또 그러한 大々的인 部之間
 의 人事交流가 있다고 斷言할 수 없는
 이러한 規程에서 일의 連結性을 보아

가지고 現任負陣이 留任해 주는 것을
正式으로 勸諭합니다.

그리고 理事陣構成에 대해서도 일단
逆出인 會長團이 銓衡委員을 逆出해서
逆出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各法式에서
한 사안씩 해서...

○김경선 會員 理事는 나중에 별도로 한
사나 勸諭해 주시기 再請하겠습니다.

○臨時 議長 崔錫模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뜻밖에도 尹會員께서 會長團과 理事

안 逆出하고 理事는 다른 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양미 안아 들었는 데도 手會員之

會長團만 勳章을 하신 지요

會長團을 金童泰會長 金鎮基副會長 이
양미 留任하자는 案이 나옵니다

그리고 再請이 있습니다

○楊澈在會員 尊敬하는 部長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은 잠시 愚見을 말씀 드려 주시기
다.

이제 任期 滿了 되는 會長團과 그리고

理事長님의 勞苦에 誠心한 감사를 드림
 니다 특히 이번 任員選出에 앞의 申
 會長님의 副會長님을 부리해나 해주시고
 따라서 會長님은 內諾를 받으셨으니 故
 留任을 해 주시고 副會長님이 對해서 是
 제가 異見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此
 기미 對해서 감동 받겠습니다.

특히 2간 副會長님과 理事長님에
 協同의 發展을 위하여 盡力하신 結果
 需要처의 南榮主 法院으로의 練記士 差

출의 金菴泰會長님의 뜻을 받아 좋은
結果를 맺었습니다.

또한 協會事業인 學料諸費를 통한 速
記普及에 힘을 써 주시는 등 協會를
大進取이 이끄는 인사의 대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그간 신제로
學協會를 이끄는 인사 副會長님의 勞苦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또 當協會가
그분의 수고를 더 바란다는 것이 氣가
아닌 것이니 앞으로의 協會事情을 全負

源道担当官의은 學協會 副會長의은으로
하 것은 正式으로 勸諭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이 것은)

○林秉鉉會員 지금 현재 敍決定足數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간간 執行陣의은 「제크를 해 면서의
모자라면 成員이 된 다음에 이 會敍를
進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臨時敍長 崔錫模 지금 成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尹炳直會員께서 會長田의
 留任을 勸說 하였습니다. 그리고 楊澈在會
 員께서는 會長은 留任하고 金鑿基副會長
 은 顧問으로 推戴하고 副會長으로 鄭源
 道會員을 選出하자. 이러한 改設가 있었
 습니다. 또 위 하신 말씀 있었습니까.

○全海成會員 故事進行으로 볼 때에 會
 長은 먼저 選出하고 그 다음에 副會長
 을 選出하는 順序로 하지요.

○臨時設長 符錫模 勸說나 改設中의 會

長은 留任시키자는 共通點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會長님은 金童泰 殿 員님으로 그
 대를 留任시키는데에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答은)
 그러면 滿場一致로 金童泰 會長님이 그
 대를 留任하신 것은 宣布함니다
 조금 前에 尹炳直 會員이 副會長은 金
 鑾基 副會長님으로 留任시키자는 意見과
 楊澈在 會員의 鄭源道 會員으로 하자는 意
 見이 있었읍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면

表決에 들어 가겠습니다.

(종류는 이 말씀)

○ 鄭源道會員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 臨時議長 崔錫模 表決에 參考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십시오.

○ 鄭源道會員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것을
... 하고 안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후에 副議長이 自己가 辭任하는
理由中에 가장 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

하는 등 모르는 등 대강 짐작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은 하고 계신 것임이나 거기
 에는 자신의 마음 아픈 표정이 허리가
 지루 작용은 양이 하고 있고 또 그러
 한 것을 排除할 수 있는 人物이 나오
 면 좋습니 다하는 지나 또 金副승은
 이나 그런 位置에서 볼 때에는 지도 도
 움이 될 수 있음이나.

此際에 그러한 改選이라는 것은 件을
 유를 보이 시는 것같은 階梯가 되겠고

또한 金堯泰會長님은 側面에서 補佐하고
 또 그분이 상당히 熱意를 가지고 우리
 協會를 牽引하시면서 會長으로 다 못하
 시는 모든 것을 副會長한테 一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副會長이 가서 諮問말
 씬을 드리면 諮問을 받고 하는데 그분
 의 橋梁役 또 이때까지 우리가 해 나
 온 ... 楊澈在會員이 말씀했으니까는 이
 때까지 끌어온 功績 이런 것을 본격에
 네우 수고가 많으니까 이번 機會에

좀 쉬시도록 한다는 그런 것은 좋습니
 다라는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重要大한
 일이 숙취度부터 잇을 잇갈습니라 그렇
 기 때문에 이번 일 만큼만은 그분한테
 어레우신 짐이지마는 하시도록 하고 오
 다음에 가서는 다시 어떻게 變更이 있
 지 量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라.
 그것을 參酌하세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라 그리고 끝이 저더러 말
 으라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께 대해

시 報 答 되 는 말 씀 은 아 닌 니 라 미 는 제 나
 를 대 로 주 각 적 으 로 느 낄 적 에 저 는 협 회
 를 떠 날 그 러 한 의 사 까 지 가 지 고 있 습 니
 다 그 러 니 까 그 령 게 안 되 도 록 여 러 분 께
 시 참 고 해 주 시 기 를 바 라 껏 습 니 라

○ 臨 時 會 長 崔 錫 模 그 러 면 아 까 말 씀 드
 린 대 로 勸 諭 의 改 議 가 있 습 니 라

지 금 在 席 人 員 이 7 5 명 이 습 니 다

改 議 부 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改 議 2 鄭 源 道 會 員 은 副 會 長 으 로 문 시

자는 案입니다.

改訂에 贊成하시는 분 挙手해 주십시오

贊成 45입니다 75名中에 45名이 挙
手를 해신 過半數가 분있읍니다 그래서
動議는 묻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鄭源道會員이 副會長으로 選出
되신 것을 宣布를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之 理事들과 理事 監事 이
령미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

는 것이 좋겠읍니까.

申會員 말씀하세요.

○申會員 理事長님은 金仁寧會員을
理事長으로 모시고 其他理事는 理事長
에게 一任하시도록 이렇게 勸說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이 있음)

○楊澈在會員 改說를 하겠읍니다. 다른이
아니고 理事長에 대한 申會員의 말
씀에는 異說가 없지만 理事를 選任하는
方法에 대해서는 지금 何種 選任되신

副會長님과 理事長님을 포함한 5명의
 銓衡委員를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뽑
 도록 ... 다시 말씀드리면 副會長님과
 理事長님이 포함된 5명인데. 세사람은
 副會長님이 自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申奭華委員에서 말씀하
 신 理事長에 대해서는 同意를 하면서
 理事選任에 대해서는 分難을 하도록 하
 는 2점에 대해서만 改訂을 하는 것이
 니다

○林未炫會員 理事長是 會長是 補弼計乙

副 會 長 까 지 輔 弼 해 야 되 는 사 랑 이 기 때 문
 에 陪 事 務 分 派 出 은 이 자 리 에 서 하 는 것 보
 다 도 副 會 長 은 重 任 으 로 하 는 銓 衡 委 員
 을 派 出 해 가 지 2 하 도 록 總 會 에 서 決 議
 로 써 委 任 해 주 면 어 떻 겠 는 지 은 2 주 日 까 지
 在 時 間 에 結 束 시 2 勞 務 을 하 2 제 시 는 데
 會 議 가 必 然 이 可 能 하 는 지 알 을 자 2 해
 서 2 주 日 까 會 議 進 行 을 해 주 었 으 면 하
 는 것 을 付 託 2 하 2 2 주 日 內 進 行 을
 해 주 었 으 면 2 주 日 內 2 주 日 內 2 주 日 內 2 주 日 內

말씀 드립니다.

○李德九會員 제가 한 말씀 한 말씀입니다.

現事들은 例年에 12頭互薦으로 해가지

고 하였는데 역시 慣例대로 하는 것이

중지 않아도? 12頭互薦 해가지고 그사실

중의부 이같이 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

데. 常識的으로 보통 理事들은 係는

序列順序으로 정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申世華係가 順序가

아닌가 생각해볼 때 申世華係는 理事들

으로 互薦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이 말씀)

○臨時議長 崔錫模 2리에 尹 尹 尹 이
 申世華 會員에서 金仁亭 會員은 理事 尹 尹 으로
 하자는 이리 한 案 이 나았고 楊澈在 會議
 이 거기 에 同意 했고 林東鎰 會員은 副會
 長한테 委任 하자는 이리 한 改議 가 나았
 음니다. 그리고 李德九 會員은 再改議 로서
 申世華 會員을 理事 尹 尹 으로 하자 이럼기
 해서 세가지 案 이 나옴 것 같습니디.

○李龍珠會員 그 간에 는 定期總會 를 할
 때 오늘과 같은 예가 없었읍니다.
 저 는 外部 에 나가 있 으니까 공기가
 어떻게 돌아 가 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피
 부로 느낀 것은 부분이 物량에 몰려와
 있는데 우리 이 사람도 얼마 안되는
 協會를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協會 本
 營의 核心인 일을 하고 있는 본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부분을 하든

滿場一致로 된 나 가 아 할 텐 데 두 분은
 동 의 表決 한 다 는 것 은 물론 우 스운 것 같 습
 니 다
 그 래 나 제 생 각 으 로 는 지 난 해 의 事 務
 實 績 이 는 지 근 最 近 이 協 會 가 充 展 되 고
 다 하 는 것 이 고 이 에 도 말 이 들 려 오 고
 전 會 員 들 의 補 選 會 는 위 해 서 7 代
 理 事 長 中 에 서 지 근 司 會 를 반 시 고 계 신
 理 事 長 은 가장 行 務 한 대 을 세 우 신 것
 같 습 니 다 .

그래서 우리 협회가 더욱 발전을 할
 려면 이같이 有能하기 活動을 많이
 하시오면 손익 리 발전은 그래서 會員들의
 福祉問題라 하면 가장 國會內에 있는
 여러분들의 福祉問題가 가장 重要視되는
 것 같습니다.
 金龍泰 會員님의 橋梁役도 이는 下代
 理事 候補에서 또 崔瑛 會員님도 眞正하게
 橋梁役을 하신 분도 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리 할 重要大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든 뭘든
 두근도 뭘이 하겠지 나는 평崔理奉님
 이 한번 더 설명하셔 가지고 그러 한
 일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생각이 되어서 崔錫模(필)理事님을
 留任시킨 것은 再再改議합니다.

○李德九會員 速記協會의 오늘까지 慣
 例도 있는지 申世華係長은 能力이 없
 어 못 할 수 까? . . . 이런 일이 있으면
 慣例대로 하면 되지 무슨 뭘이 이럼지

받아오

○ 李龍洙 議員 設辭 한 것 같아서 받으려

는리 金仁壽 씨에 金이나 申世華 씨에 金이

나 씨가 二人의 能力은 무시해서 하

는 예기가 아닙니까.

慣例가 있습니까. 李德九 議員의 받이

받아오. 내가 지은 慣例를 무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二人은 한번 더 留任

시키자는 것입니까.

○ 李龍洙 議員 崔錫模 常任委員 에게서도 高

결이 一致되지 않은 때에는 停會를

다다

意思調整을 위해서 한 5분만 停會를

하겠음니다

(16時 8分 會議 中止)

(16時30分 繼續開會)

○臨時議長 崔錫模 統帥을 宣布합니다.

아까 理事長 選出의 때에서 申世華會員
이 金仁寧會員을 理事長으로 任하는 勳

勳가 있고 그 다음에 林素炫會員이

副會長이 任 委任하는 改選가 있고

李德九會員이 申世華會員을 理事長으로

任하는 再改選가 있고 李龍洙會員이

이 理事長으로 그 다음 留任시키지는

再再改選가 있을 音입니다.

이런 狀態에서 잠시 停會했다가 이제
 繞用을 改定합니다.
 李德九會員 報告하시오
 李德九會員 제가 報告드리겠습니다.
 제가 順序대로 慣例대로 申世華會員을
 理事長으로 互薦을 했는디 그 裏面의
 牙舌 雜音이 甚 많는 것 같아서 제가
 大韓速記協會의 宗旨부터 說明하면서 協
 會의 系統을 위해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留任여기가 나왔는데 留任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理事
 長候補者의 身에 마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留任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이다.
 아마 여기 오기 전이 알렸을 것으로
 내강 理事長候補로 지정 후분이 登場
 된다는 것이 그 背景가 어떻게 된 것이지
 라는 것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協會의
 體統을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每

상정이라든가 書田院에 勸告한사
 한다면 生生의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申世華會員 先生 이 사람을 理事長이
 라는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功을

이게 공인하지 못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
하지 마는 客觀的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 이 重責을 맡은 能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나시의 車라는 것은
그야말로 運轉士가 運轉승이 있어야지
運轉하지 못하는 사람이 運轉승이 없으
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運轉하지 못하는 運轉士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이의는 이 | 協調회 | 尹鳳은 | 李鳳은 |
 李德九會員 | 아미 | 鄭源道會員 | 미 | 副
 會長의 | 補選이 | 의의은 | 脫離한 | 만공의
 尹은 | 李은 | 사유가 | 있다하는 | 李은
 李은 | 의 | 大韓速記協會가 | 지은 | 會員
 이 | 李은 | 150 명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李은 | 10年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李은 | 2 | 李은 | 2 | 李은 | 李은 | 李은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이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 李은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各院 對此 實地 考察 甚 詳 確 也
 二 次 之 後 經 表 明 其 是 改 訂 再 改 訂 之
 否 再 再 改 訂 不 知 其 實 否 也 此 種 事 實 是
 人 事 問 題 也 其 實 此 以 上 之 論 論 是 終 結 之
 事 也 表 明 其 是 實 地 考 察 之 實 也
 (考 察 之 實 地 考 察)
 〇 幾 千 名 會 員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之 實 地 考 察

他人의 立場을 讓步한 事實이 있을 때에 는 그
 自己의 讓步한 事實이 有 하는 것 입니다.
 平壤 監司의 地位가 空位이면 그만큼 有 하는 것
 이며 他人의 立場이 有 하는 것이니까 그
 런 것을 讓步한 事實이 有 하는 바람 입니다.
 ○ 金永春 會員 씨가 理事中 任 事 人員이 有
 하는 時分까지 아무 事도 有 하지 않고
 있 었는데 平壤 監司의 空位 有 하는 時分
 有 하는 때에 該 氏가 任 事 人員이 有 하는
 것 이며 事實 協會에서 任 事 人員이 有

는 사랑이 어니 애타우니까?
 영의 영이 아니고 뭐하는 것입니까? 現 후
 통이 라는 것 남 심부름이나 해 주는 사
 람 아십니까? 사실 이런 사랑이 없어야
 고 영이 영기 심부름해 달라고 해서
 됩니까 마지 못하기 때문에 使命感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른 하기 싫으면
 協會 그만 두어야
 후 1 時부터 지금까지 없아왔는 것
 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說明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 바깥에서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하고 해서 모든 團體에게 平壤監査
 처가 通知한 如하 2인 思考方式
 이라함 이같이 運營한 事 故는 明한
 事.

心算을 하는 事는 考課의 爲에 對하여

○李龍沫^{會員} 내가 再再改議를 했으니 까 한
 마디 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句句節節이 응은 말씀들을 하였
 는데 제가 아까 現理事長을 留任시키자
 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가만히
 와서 보니까 金仁寧會員을 미는 분들이
 있고 또 申世華會員을 理事長으로 미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留任시키자는 분
 제는 慣例를 깨는 것도 아니고 또 우
 는 꼭 慣例대로 係長順番대로 돌아간다

는 것이 이 團體의 系統을 明確하게

애기 하면 더 快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雜音이 있을 때 現

理事長이 그대로 留任하는 것도 좋지 않

은바 그러서 제가 그런 再再改議를 했

으니까 人事問題는 더 論議하지 말고

表決합시다.

○臨時敎長 崔錫模 지도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今年度 11月30日 입니다. 첫 좀 하다

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서 定期國會가 12月 2日 날 끝나고 해서
 그것들을 끝내 놓고 안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總會도 있고 해서 그것이나
 끝내 놓고 안 나오려고 마음 먹고 있었
 으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읍니다.

그래서 생각끝아서 는 한 십여日前에
 仁人일로 기분이 조금 나쁜 일이 있거
 서 보따리나 둘러매고 어디 山이나 들
 이 가서 그냥 罷免을 당하든지 말든지

무안히 안나올 그런 決心을 갖고 있
 있는데 그래도 總會만 끝나고 보차 이
 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왔읍니다.
 제가 일보는 중미 여러분들이 맡겨
 주신 것은 거의 다 했읍니다. 이 協會
 任員任期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됐지 자꾸 불러왔을 이유도 없구요 그
 리고 留任을 하라고 제일 처음부터 勸
 諭를 해 주셨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留任을 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지금 이 상례에서는 제가 말
아도 제대로 일을 볼 수가 없을 것 같
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회의를 보면서
제 문제를 꺼낼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再再改改는 없는 것으로 하고 再改改부
리.....

(「規則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盧熙南會員 여기가 여러 先輩님들의
演說場 같이 되고 있는데도 리도 한 말
씀 하겠읍니다.

理事長이라는 것이 滿場一致가 되었으
 면 우리가 贊 同하겠지만 意見一致가 안
 되니까 尙題 뜻이 많은 데요. 저희 생각으
 로는 이렇게 서로 尙題 뜻이 있을 때
 가장 무난하게 가장 원만하게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投票이
 들어가게 會 議를 進行해 주시면 좋겠음
 니다.

○李德九會員 畧團氣가 상당히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제 再改 議는 撤回하겠음니다.

○臨時議長 崔錫模 . 그러면 李德九會員이
再改議를 撤回한다는데에 同意합니까?

(「同意합니다, 하는 이 있음」)

撤回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林來鉉會員 - 제 改議도 撤回하겠읍니다.

○臨時議長 崔錫模 同意합니까?

(「同意합니다, 하는 이 있음」)

撤回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이제 그만 表決행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쪽 해온 慣例도 있

구요. 이런 상 황에 서 받게 되고 하면
 알은 사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
 아요. 그래서 脚本이라면 우유유니 다 마는
 데게 總會 하기 전에는 우유 우유 결국
 다 案이 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申世華會員이 勸諭한
 金仁寧會員을 理事長으로 하는 것을 滿
 場一致로 그 냥 ...
 ○李龍洙會員 내가 몇년 전에 國會事務
 處 그만 두고 나가서 지금 강사를 하

고 있지 마는 會員資格 그렇게 無視하지

않아도. 再再改選한 것을 먼저 묻어야

합니다. 規則대로 합니다.

○ 臨時議長 崔錫模 司會가 시를리 죄송

합니다.

中世華會員이 金仁寧會員을 理事長으로

하자는 動議 그리고 李龍洙會員이 崔錫

模會員을 留任시키자는 改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되고 해서 本人은

辭讓을 했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 고집
하신다면 회사를 누구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楊澈在會員 그러면 제가 敎事進行으로
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前理事長님께서 회사를 보기가 기록하
시면 여기 이 자리며 원론이시고 并者
이신 安仁榮會員님이 앉아 계십니다.

安仁榮會員님을 臨時敎長代理로 모시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습니까?

(一同拍手)

(崔錫模 議長代理, 安仁寧 會員과 司會交代)

○臨時議長代理 安仁榮. 여러분을 要請에
위해서 제가 臨時로 司會를 보겠읍니다.

먼저 지금까지 전우 論議가 되었기 때
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改選부터
문겠읍니다.

李龍洙 會員께서 改選하신 崔錫模 會員을
理事長으로 留任시키는데 여러분중 贊成
하시든 분 挙手해 주세요.

(挙手表決)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會員 21名中에서 崔錫模會員이 49
票를 받았기 때문에 勸諭는 분지 않겠
습니다.

崔錫模會員이 理事長으로 再選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새로 理事長으로 選出되신 崔
錫模會員께서 人事말씀을 하시겠습니다.

(安仁榮 會員, 崔錫模 理事長 과 司會 交代)

○理事長 崔錫模 고 말씀니다. 來日 當장 어떻게 되는 筵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끝내는 것을 目的으로 해서 제가 말드려 하겠읍니다.

○臨時議長 崔錫模 다음에는 理事를 二人 選出하기로 되어 있고 또 監事를 二人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會談 進行上 監事 두 사람을 먼저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 어쨌습니까?

(「종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事를 먼저 뽑겠습니다. 口頭
互薦하십시오.

○楊澈在會員 監事 두분중에서 한분은
內部로 한분은 外部로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아서 內部에서 金永春會員과
外部에서는 高太仲君 總務部長으로 할 것
을 動議하겠습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臨時議長 崔錫模 ㄹ 말씀하시겠는 분
있음니까?

(있음니까라는 이 말씀)

그러면 지금 楊澈在會員이 金永春會員
과 高太仲會員 두분을 監事로 하는 勳
議와 再請까지 나왔음니다.

그러면 다른 분 ㄹ 推薦할 분이 없
으면 이 두분을 滿場一致로 監事に 選
出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음니까?

(異說 없읍니다. 하는 이 말씀)

그러면 두 분이 選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에는 理事를 12人 이내로 뽑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全海峽會社 지금 시간도 많이 갖고 했으니까 會長團과 理事長 이분들에게 一任을 하는 것으로 勸說를 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이 말씀)

○臨時議長 崔錫模 ㄹ 말씀하실 분 있
음니까?

○金永春 會員 방금 말씀하신 勳章에서
會長 固하고 理事長에게 一任을 했는데
지금 여러 분이 삼시는 바와같이 會長 固
은 여기에 勳문도 있습니다. 理事長 이
勳문 본인 데 그 勳문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지금 發表 해야 되겠는데 안 크
니까 改訂 ㄹ 金基英氏 하고 黃演河氏 그
리고 鄭明吉氏 이렇게 세 분 하고 理事長

으로서 銓衡委員을 構成해 가지고 지금
 任員을 選出해서 이 자리 에 發表해 주시
 기 바라면서 그렇게 改訂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이 뜻은)

○臨時議長 崔錫模 지금 全海成會員께서
 會長團과 理事長한테 一任을 한다는 動
 議가 있었고 金永春會員께서 會長團과
 理事長 金基英氏 黃寅河氏 鄭明吉氏 등으
 르 銓衡委員을 構成해서 任員을 選出하
 여 이 자리 에서 發表를 하라 이런 改議

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全海成會員 제 勸諭는 撤回를 하겠읍
니다. 다만 懸가지 냈을여 말씀드리면
全永春會員의 改訂속에 이 자리에서 發表
하라는 部分은 追후로 했으면 좋겠읍니
다. 이상입니다.

○臨時議長 崔錫模 지금 全海成會員이
말씀하신 것을 改訂에 포함시키드
리겠
읍니까?

○全永春會員 그렇게 해드 좋습니라.

○臨時議長 霍錫模 그러면 會長團 理事
 長 李基英氏 黃寅河氏 鄭明吉氏를 經衡
 委員으로 해서 理事의 選出을 委任하되
 오늘 이 자리에서 發表하는 것은 아니고
 追后 發表한다는 李永春委員의 改訂에
 여러분 贊成하십니까?

(종승니다 하는 이 불응)

그러면 그렇게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其~~ 他 事務입니다.

○楊澈在會員 우리가 가장 宿願이 되었

던 문제를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새로 選出된 副會長님과 留任된
理事長님 또 選出된 理事들에게 제가
무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李龍泰會長님께 강력히 稟議하시
어 우리 速記士들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盡力하여 주십시오.

둘째 작은 집안같은 아나 親戚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도록 當協會의 親睦을

더욱 튼튼히 해주십시오.

새재 외부 소속 들 에게 도 충 협 수 에 대 한

참 여 의 의 식 을 보 다 늘 려 주 시 요.

네재 새르 逆 회 는 理 事 들 이 보 람 을

갖 고 일 할 수 있 게 끔 힘 껏 일 어 주 시 요.

이것은 會 長 단 과 理 事 長 에 게 부 탁 드

리 는 말 씀 입 니 다.

이상입니다.

○ 臨 時 議 長 崔 錫 模 楊 澈 在 會 務 의 부 탁 말

씀 잘 들 었 음 니 다.

또 발언하실 분 언제입니까?

(있음니다하는 이 말씀)

그러면 其他事項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의 第10回 大韓速記協會 定期總

회를 전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時2分 散會)

第10回 定期總會

1976. 12. 11.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회 순 —

1. 개 회
2. 국 민 의 례
3. 회 장 인 사
4. 내 빈 축 사
5. 성 원 보 고
6. 전 총회 의사록 통과
7. 회 무 보 고
8. 1976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9. 197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10. 정 관 개 정 의 건
11. 임 원 개 선
12. 기 타
13. 폐 회

회 무 로 고

1. 집행부서

| | | | |
|---------|---|---|---|
| 총무재정부장 | 고 | 래 | 중 |
| 선전부장 | 김 | 윤 | 수 |
| 사업부장 | 황 | 인 | 화 |
| 외국어부장 | 노 | 영 | 민 |
| 연구위원장 | 김 | 영 | 춘 |
| 자격심사위원장 | 이 | 강 | 현 |
| 무임소이사 | 정 | 명 | 길 |
| | 김 | 복 | 동 |

2. 방학을 이용한 속기강습

| 시기 | 기간 | 장소 | 강의법식 | 수강인원 | 수료인원 |
|----|------------------|--------|-----------|------------------------------|------------------------------|
| 겨울 | '76
1.12~31 | 동방속기학원 | 동방
그레그 | 국어 478명
영어 184명
계 662명 | 국어 340명
영어 130명
계 470명 |
| 여름 | '76
7.26~8.18 | 동방속기학원 | 동방
그레그 | 국어 212명
영어 114명
계 326명 | 국어 144명
영어 44명
계 188명 |

3. 전국 속기사 기능검정

| 회수 | 일차 | 장소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
| 10회
(봄) | 76. 4. 25 | 국회속기사양성소 | 국어각급 67명
영어각급 13명
계 80명 | 국어각급 16명
영어각급 7명
계 23명 |
| 11회
(가을) | 76. 10. 31 | 국회속기사양성소 | 국어각급 89명
영어각급 27명
계 116명 | 국어각급 54명
영어각급 4명
계 58명 |

4.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 기간 | 대상단체 및 장소 | 인원 | 강사 |
|----------------|---------------|-----|-----|
| 76
3월 ~ 8월 | 서울
시립부녀사업관 | 50명 | 김명준 |
| 76
3월 ~ 12월 | 서울
창덕여고 | 70명 | 김복동 |

5. 회지발간 : 17호 발간

6. 체육대회 : 5. 2 산업은행연수관 (강남구하일동)

'76년도 결산보고

세입

1975. 12. 20 ~ 76. 12. 1

| 관 | 항 | 예산액 | 결산액 | 비고 |
|------|---------|-----------|-----------|----|
| 기본수입 | | 293,000 | 246,000 | |
| | 월회비 | 288,000 | 241,000 | |
| | 입회비 | 5,000 | 5,000 | |
| 사업수입 | | 1,334,400 | 1,628,700 | |
| | 방학강습수수료 | 1,204,400 | 1,492,500 | |
| | 기능검정수수료 | 130,000 | 136,200 | |
| 찬조금 | | 420,000 | 600,330 | |
| 잡수입 | | 25,803 | 108,000 | |
| 이월금 | | 926,152 | 926,152 | |
| 계 | | 2,999,355 | 3,509,182 | |

세 출

| 관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 고 |
|-----|-------------|---------------|-----------|-----------|-------------------------|
| 회의비 | 정기총회
회의비 | | 154,000 | 148,100 | |
| | | | 100,000 | 100,000 | 총회경비, 기념품대 |
| | | | 54,000 | 48,100 | |
| | | 이 사 회 | 36,000 | 36,000 | 이사회 9회
(66차~74차) |
| | | 부 장 회 의 | 6,000 | 5,000 | 3 회 |
| | | 자 격 심 사 위 원 회 | 6,000 | 4,100 | 29차~33차 5회 |
| | | 연 구 위 원 회 | 6,000 | 3,000 | 9차~11차 3회 |
| 경상비 | 사무비 | | 62,400 | 14,000 | |
| | | | 62,400 | 14,000 | |
| | | 사무용품비 | 12,000 | 2,000 | |
| | | 인 쇄 비 | 30,000 | 6,000 | 체육대회 조형장
방학강습 수료증 |
| | | 통 신 비 | 12,000 | 4,000 | 속기체 우송 우표대 |
| | | 도 필 및 필 경 료 | 8,400 | 2,000 | 법인 정기 보고서
방학강습 안내 필성 |
| 수용비 | 공과금 | | 5,000 | 0 | |
| | | | 5,000 | 0 | |
| 사업비 | 방학이용강습 | | 2,141,000 | 1,499,420 | |
| | | | 975,000 | 882,500 | |

| 관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고 |
|---|--------|---------|---------|---------|------------------------------------|
| | | 입대료 | 80,000 | 60,000 | 국어 40,000
영어 20,000 |
| | | 교재대 | 300,000 | 292,000 | 국어 200,000
영어 92,000 |
| | | 강사료 | 120,000 | 60,000 | 국어 36,000
영어 24,000 |
| | | 광고료 | 390,000 | 390,000 | 동아, 조선 2회
중앙, 서울 1회
일간스포츠 1회 |
| | | 인쇄비 | 30,000 | 25,500 | 원서, 안내서, 수료증 |
| | | 인건비 | 49,000 | 49,000 | 접수자 사례비 |
| | | 수수료 | 6,000 | 6,000 | 수취실, 청부 사례비 |
| | 수기경기대회 | | 130,000 | 0 | |
| | 가능점쟁이팀 | | 144,000 | 109,520 | |
| | | 임대료 | 20,000 | 14,600 | |
| | | 용지및인쇄비 | 11,000 | 2,000 | 안내서 |
| | | 광고료 | 80,000 | 59,920 | 서울 |
| | | 출제및감독수당 | 8,000 | 8,000 | |
| | | 채점비 | 25,000 | 25,000 | |
| | 회지발간 | | 444,000 | 253,800 | |
| | | 인건비 | 24,000 | 10,000 | |

| 과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 고 |
|---|-------------------------------|---------|-----------|-----------|--|
| | | 원 고 료 | 60,000 | 47,400 | 100원 x 474매
= 47,400 |
| | | 인 쇄 비 | 360,000 | 196,400 | |
| | 속기학술연구 | | 102,000 | 5,000 | |
| | | 자료수집비 | 23,000 | 0 | |
| | | 연구교안인쇄대 | 25,000 | 0 | |
| | | 연구비 | 54,000 | 5,000 | |
| | 각급학교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체육대회 | 보 조 비 | 96,000 | 3,600 | |
| | | | 250,000 | 245,000 | |
| | | 임 대 료 | 30,000 | 25,000 | |
| | | 용구구입비 | 100,000 | 100,000 | |
| | | 상 품 대 | 30,000 | 30,000 | |
| | | 음료및식대 | 90,000 | 90,000 | |
| | 관공비 | | 200,000 | 187,150 | |
| | 예비비 | | 436,955 | 305,910 | 제9회 정기총회
부족분 79,910
제19회 방학강습
광고료부족 58,000
제6회 체육대회
경비부족분 168,000 |
| | 이월금 | | | 1,354,602 | |
| | 계 | | 2,999,355 | 3,509,182 | |

1977년도 사업계획서 (안)

| 사업명 | 목 로 | 예산액 | 비 고 |
|-----------------------------|--|-----------|-----|
| 1. 방학이음
속기강습 | 대상 :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
기간 : 3주간
회수 : 2회 (겨울, 여름) | 1,065,000 | |
| 2. 전국속기사
기능검정시험 | 대상 : 속기 학술 연수자 및 속기사
회수 : 2회 (봄, 가을) | 152,000 | |
| 3. 속기경기대회 | 대상 : 속기 학술 연수자
회수 : 1회 | 130,000 | |
| 4. 속기학술연구 | 속기 법식 개량으로 속기 연구의
저변 확대와 고속화를 꾀함 | 102,000 | |
| 5.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 강습 | 실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이나 속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의 요청에 의한 출장 | 96,000 | |
| 6. 획지 발간 | 규격 : 국 관
부수 : 1,000 부
회수 : 2 회
면수 : 120 면 | 444,000 | |
| 7. 체육대회 | 회원간의 인화 단결과 체위 향상 | 250,000 | |
| 계 | | 2,339,000 | |

197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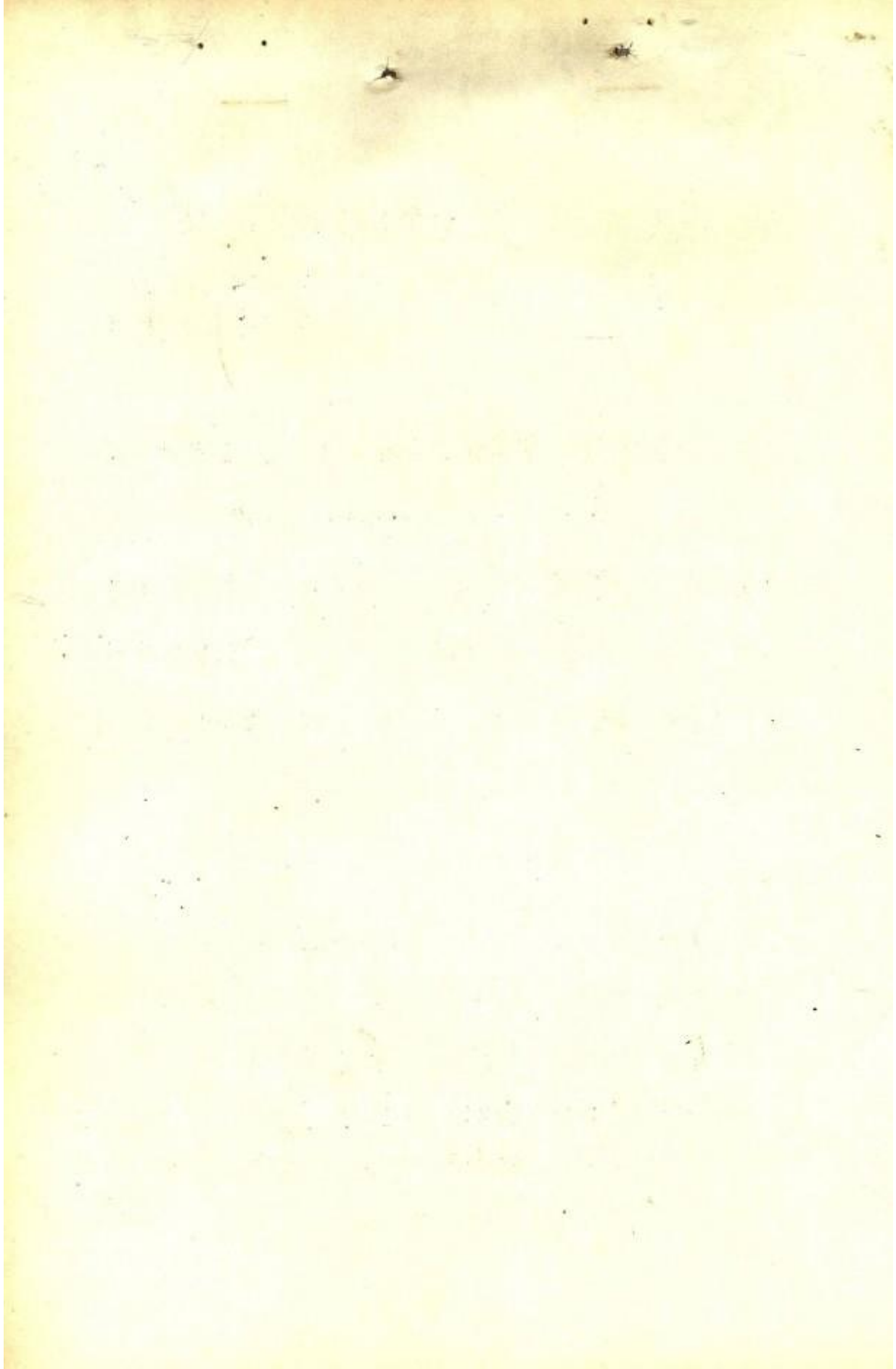
| 과 목 | |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기본수입 | | | 293,000 | 293,000 | 0 | |
| | 월회비 | | 238,000 | 238,000 | 0 | $200\text{원} \times 120\text{인} \times 12\text{회} = 238,000$ |
| | 입회비 | | 5,000 | 5,000 | 0 | $500\text{원} \times 10\text{인} = 5,000$ |
| 사업수입 | | | 1,334,400 | 1,660,500 | 326,100 | |
| | 방축장습
수수료 | | 1,204,400 | 1,492,500 | 287,700 | |
| | 기능검정
수수료 | | 130,000 | 168,000 | 38,000 | 700원 \times 40인 \times 2회 = 56,000
3-8급
500원 \times 40인 \times 2회 = 40,000
9-12급
1200원 \times 30인 \times 2회 = 72,000 |
| 차조금 | | | 420,000 | 500,000 | 80,000 | |
| 잠수입 | | | 25,803 | 180,000 | 154,197 | 이자 연 18% |
| 이월금 | | | 926,152 | 1,354,602 | 428,450 | |
| 계 | | | 2,999,355 | 3,938,102 | 938,747 | |

| 과목 |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목 | | | | |
| 회의비 | | 154,000 | 204,000 | 50,000 | |
| | 정기총회 | 100,000 | 150,000 | 50,000 | 총회정비 50,000
기념품대 100,000 |
| | 회의비 | 54,000 | 54,000 | 0 | |
| | 이사회 | 36,000 | 36,000 | 0 | 3,000원 x 12회 = 36,000 |
| | 부장회의 | 6,000 | 6,000 | 0 | 500원 x 12회 = 6,000 |
| | 자격심사위원회 | 6,000 | 6,000 | 0 | 1,000원 x 6회 = 6,000 |
| | 연구위원회 | 6,000 | 6,000 | 0 | 1,000원 x 6회 = 6,000 |
| 경상비 | | 62,400 | 62,400 | 0 | |
| | 사무비 | 62,400 | 62,400 | 0 | |
| | 사무용품비 | 12,000 | 12,000 | 0 | 1,000원 x 12월 = 12,000 |
| | 인쇄비 | 30,000 | 30,000 | 0 | 2,500원 x 12월 = 30,000 |
| | 통신비 | 12,000 | 12,000 | 0 | 1,000원 x 12월 = 12,000 |
| | 포털및필경료 | 8,400 | 8,400 | 0 | 700원 x 12월 = 8,400 |
| 수용비 | | 5,000 | 5,000 | 0 | |
| | 공과금 | 5,000 | 5,000 | 0 | |
| 사업비 | | 2,141,000 | 2,239,000 | 97,800 | |
| | 방학강습비용 | 975,000 | 1,065,000 | 90,000 | |
| | 임대료 | 80,000 | 80,000 | 0 | 강의실 1일 x 2,000원 x 20
x 2회 = 80,000 |

| 과 |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 | 교재대 | 300,000 | 300,000 | 0 | $300\text{원} \times 500\text{인} \times 2\text{회} = 300,000$ |
| | | 강사료 | 120,000 | 120,000 | 0 | $5\text{인} \times 600\text{원} \times 20\text{일} \times 2\text{회}$
$= 120,000$ |
| | | 광고료 | 390,000 | 480,000 | 90,000 | $80,000\text{원} \times 3\text{개지} \times 2\text{회}$
$= 390,000$ |
| | | 인쇄비 | 30,000 | 30,000 | 0 | $15,000\text{원} \times 2\text{회} = 30,000$ |
| | | 수수료 | 6,000 | 6,000 | 0 | |
| | | 인건비 | 49,000 | 49,000 | 0 | $500\text{원} \times 7\text{인} \times 7\text{일} \times 2\text{회}$
$= 49,000$ |
| | 추경기대회 | | 130,000 | 130,000 | 0 | |
| | | 임대료 | 3,000 | 3,000 | 0 | |
| | | 용지및인쇄비 | 10,000 | 10,000 | 0 | 안내서, 원서, 답안지 |
| | | 광고료 | 40,000 | 40,000 | 0 | |
| | | 출세및양품수당 | 3,000 | 3,000 | 0 | $6\text{인} \times 500\text{원} = 3,000\text{원}$ |
| | | 채집비 | 13,000 | 13,000 | 0 | 쿠어
$1\text{인} \times 500\text{원} \times 20\text{인} = 10,000$
영어
$1\text{인} \times 500\text{원} \times 6\text{인} = 3,000$ |
| | | 상장및상품비 | 61,000 | 61,000 | 0 | 상장및케이스 9개
4,500
상품
쿠어정급 1, 2, 3등 = 25,000
영어 " = 25,000
쿠어준급 " = 6,500 |

| 과 |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 기능합계 | | 144,000 | 152,000 | 8,000 | |
| | | 용지및인쇄비 | 11,000 | 11,000 | 0 | 안내서, 원서, 답안지 |
| | | 광고료 | 80,000 | 80,000 | 0 | 40,000원 x 2회 = 80,000 |
| | | 출세및상독임 | 8,000 | 8,000 | 0 | 8인 x 500원 x 2회 = 8,000 |
| | | 채접비 | 25,000 | 20,000 | △5,000 | 1인 x 500원 x 20인 x 2회
= 20,000 |
| | | 시험감독수당 | 0 | 33,000 | 33,000 | 1인 x 1,500원 x 11인 x 2회
= 33,000 (신설) |
| | | 임대료 | 20,000 | 0 | △20,000 | 원채시설이용으로 삭감 |
| | 회지발간 | | 444,000 | 444,000 | 0 | |
| | | 인건비 | 24,000 | 24,000 | 0 | 12,000원 x 2회 = 24,000 |
| | | 광고료 | 60,000 | 60,000 | 0 | 1매 x 100원 x 300매 x 2회
= 60,000 |
| | | 인쇄비 | 360,000 | 360,000 | 0 | 조판비, 본문용지대
본문인쇄비, 본문동판비
표지용지대, 표지인쇄비
표지동판비, 표지도안료
제본비 등 |
| | 속기학술연구 | | 102,000 | 102,000 | 0 | |
| | | 자료수집비 | 23,000 | 23,000 | 0 | 도서등판제자료구입 |
| | | 연구교양인쇄대 | 25,000 | 25,000 | 0 | |
| | | 연구비 | 54,000 | 54,000 | 0 | 1인 x 6,000원 x 9인 = 54,000 |

| 과 |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 각급학교
사회단체
속기강습 | 보조비 | 96,000 | 96,000 | 0 | |
| | 체육대회 | | 250,000 | 250,000 | 0 | |
| | | 임대료 | 30,000 | 30,000 | 0 | |
| | | 용구구입비 | 100,000 | 100,000 | 0 | 유니폼 700원 × 130인
= 91,000 |
| | | 상품비 | 30,000 | 30,000 | 0 | 불.기구 9,000 |
| | | 현및 식대 | 90,000 | 90,000 | 0 | 1인 × 600원 × 150인 = 90,000 |
| 관공비 | | | 200,000 | 120,000 | △ 80,000 | 1월 × 10,000원 × 12월
= 120,000 |
| 적립금 | | | 0 | 1,000,000 | 1,000,000 | 신설 |
| 예비비 | | | 436,955 | 357,702 | △ 79,253 | |
| 계 | | | 2,995,355 | 3,988,102 | 988,347 | |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中改正(案)

提出年月日: 1976. 12.

提案者: 理事會

提案理由

文化公報部所管 非営利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關한 規則 (1976. 3. 22 文化公報部令 第53号) 의 社団法人 定款準則에 의거, 任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하고, 監事의 職務를 強化하고 監督官庁에 의 報告를 明文化하고 現實에 맞게 字句整理를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副會長을 1人으로 함 (案第9條 第2号)
- 나. 任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함 (案第11條 ①)
- 다. 監事의 職務를 強化함 (案第15條)
- 라. 議決除斥事由를 新設함 (案第20條)
- 마. 事業計劃書等의 報告를 新設함 (案第37條)
- 바. 第8章 (事務局) 削除함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中改正(案)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6号中 “速記文化의”를 “速記界의”로, “第7号”를 削除하고,

第5條 第2項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를 削除하고,

第6條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 各号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①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 運營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② (正會員)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③ (準會員) 準會員은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8條”를 “第7條”로, “第9條”를 “第8條”로, 同條 第1号中 “第7條”를 “第6條”로, “第10條”를 “第9條 (任員)”로, 同條 第2号中 “2人”을 “1人”으로, “第11條”

를 “第10條”로, “第12條”를 “第11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送出) 任員은 總會에서 送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第11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監事는 2年으로 한다.

②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余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3條”를 “第12條”로, “第14條”를 “第13條”로, 同條中 “總務理事”를 “理事長이 指定하는 理事”로, “第15條”를 “第14條”로, “第16條”를 “第15條”로, 同條 3. 4. 5 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号 및 第2号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處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4. 第3号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進출 할 수 있다.

“第17條”를 “第16條”로, “第18條”를 “第17條”로,
“第20條”를 “第18條”로, 同條第~~1~~項中 “在籍構成員”
을 “在籍會員”으로, 第19條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議決事項) 總會에서 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 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處分, 売渡, 贈與, 担保, 貸與, 取得, 起債
4. 予算 및 決算의 承認
5. 事業計劃의 承認
6. 其他 主要한 事項

第20條(議決除外事由) 總會議決의 除外事由는 다음과 같다.

- ①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에 關한 事項
- ② 金錢 및 財産의 授受에 關連되는 事項으로서 本協會와 利害가 相反되는 者에 關한 事項

第21條中 “理事”를 “理事長과 理事”로, 第22條 但書를 削除하고 “第24條”를 “第23條”로, “第23條”를 “第24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 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한다.

第24條(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改正案의 提出
6. 財産 管理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8. 總會에 附設할 案件의 作成
9. 理事長이 附設하는 事項

“第7章”을 “第6章”으로, “第28條”를 “第25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財政) ①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区分한다.

② 基本財産은 売渡, 贈與, 貸貸, 交換 또는 担保로 提供하거나 起債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9條”를 “第26條”로, “第31條”를 “第27條”로 하고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會計年度 1

10月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0條”를 “第29條”로 하고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하되 事業運營을 專担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6章”을 “第7章”으로, “第25條”를 “第31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部署)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1. 總 務 部

2. 財 政 部

3. 涉 外 部

4. 事 業 部

5. 外 國 語 部

6. 研究委員會

2. 資格審查委員會

“第26條”를 “第32條”로, “第27條”를 “第33條”로,

“第8章 事務局”을 削除하고 “第9章”을 “第8章”으로,

“第35條”를 “第34條”로, “第36條”를 “第35條”로,
“第37條(定款變更)”를 “第36條(定款改正)”으로 하고 同
條 第1項中 “定款改正”을 “定款改正案”으로 하고 第37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事業計劃書等の 報告) 翌年度の 事業計劃書 및 予算
書와 当該年度の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財産目録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第38條中 “規則”을 “會規”로, 第4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則 ③ 이 定款은 1976年 12月 11日부터 施行한다.

新·旧條文對比表

| 現 行 | 改 正 案 |
|--|--|
| <p>第4條(事業) 6. 外國速記文化의 交流에 關한 事項</p> <p>7. 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關한 事項</p> <p>第5條(會員資格)</p> <p>② (正會員) 正會員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한 자격심사에 合格된 者 (자격심사에 關한 사항은 會規로서 定한다)</p> <p>第6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協會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p> <p>第7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号의 義務를 가진다.</p> <p>第8條(會員의 脫退)</p> <p>第9條(懲戒)</p> <p>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p> <p>第10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p> <p>2. 副會長 <u>2人</u></p> | <p>第4條(事業) 6. 外國速記界와의</p> <p style="text-align: center;">-----</p> <p>7. (削除)</p> <p>第5條(會員資格)</p> <p>② (正會員)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者 (削 除)</p> <p>第6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各号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p> <p>第7條(會員의 脫退)</p> <p>第8條(懲戒)</p> <p>1. 第6條의 -----</p> <p style="text-align: center;">-----</p> <p>第9條(任員) -----</p> <p style="text-align: center;">-----</p> <p>2. 副會長 <u>1人</u></p> |

現 行

改 正 案

(新設)

(新設)

第17條(構成)

第18條(召集)

第20條(定足數) ①總會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9條(附議事項) 總會에 附
議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2. 予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報告한다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련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16條(構成)

第17條(召集)

第18條(定足數) ①總會는 在籍
員 -----

第19條(議決事項) 總會에서 議
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處分, 賣渡, 贈與
擔保 貸與 取得 起債

現 行

改 正 案

- 4.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 5. 其他 委任事項

- 4. 予算 및 決算의 承認
- 5. 事業計劃의 承認
- 6. 其他 主要한 事項

(新 設)

第20條(議決除斥事由) 總會議決

의 除斥事由는 다음과 같다.

- 1.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에 관한 事項
- 2. 金錢 및 財産의 授受에 關聯되는 事項으로서 本協會의 利害가 相反되는 者에 關한 事項

第21條(構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 構成한다.

第21條(構成) - - - - -

- - - - -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第22條(召集) - - - - -
다만,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2條(召集) - - - - -

(但書 削除)

第24條(定足數) 理事會는 在籍 構成員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한 者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23條(定足數) 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한다.

現 行

改 正 案

第 23 條 (附設事項) 理事會에 附
設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設決된 事項의
執行에 關한 事項
2. 總會에 附設할 案件의
予備審議에 關한 事項
3. 予算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運營에 關한 事項
5. 定款改正案의 提出에 關
한 事項
6. 會員加入의 決定에 關한
事項
7. 會員懲戒에 關한 事項
8. 其他 重要事項

第 7 章 財 政

第 28 條 (財政) ① 本協會의 財産
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
産으로 한다.

第 24 條 (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改正案의 提出
6. 財産管理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8. 總會에 附設할 案件의 作
成
9. 理事長이 附設하는 事項

第 6 章 財 政

第 25 條 (財政) ① -----
----- 普通財産으
로 区分한다.

1. 基本財産은 法人設立時 그
設立者가 出捐한 財産과 理
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定款
財産으로 한다

| 現 行 | 改 正 案 |
|--|---|
| <p>㉔基本財産은 年1回 1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p> <p>㉔基本財産은 債貸處分 其他私權을 設定하거나 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p> | <p>2. 基本財産은 -----</p> <p>-----</p> <p>-----</p> <p>㉔基本財産은 売渡 贈與 債貸 交換 또는 担保로 提供하거나 起債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
| <p>第29條(歲入等) -----</p> | <p>第26條(歲入等) -----</p> |
| <p>第31條(會計年度) -----</p> | <p>第27條(會計年度) -----</p> |
| <p>(新設)</p> <p>第30條(會計監査) -----</p> | <p>第28條(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會計年度 1 10月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
| <p>(新設)</p> <p>第6章 執行部署</p> | <p>第29條(會計監査) -----</p> <p>第30條(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하되 事業 運營을 全担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p> |
| <p>第25條(部署) 理事會에서 다</p> | <p>第7章 執行部署</p> <p>第31條(部署) 理事長의 指示를</p> |

現 行

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 1人을 둔다.

1.

2.

3. 宣伝部

第 26 條 (各部署의 業務分担)

第 27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第 8 章 事務局

第 9 章 補 則

第 35 條 (解散) - - - -

第 36 條 (残余財産) - - - -

第 37 條 (定款變更) ① 本協會의

定款改正은 理事会 決議나 正會員 20名以上の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新 設)

政 正 案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 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3. 渉外部

第 32 條 (各部署의 業務分担)

第 33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削 除)

第 8 章 補 則

第 34 條 (解散) - - - -

第 35 條 (残余財産) - - - -

第 36 條 (定款改正) ① 本協會의 定款改正案은 - - - - -

第 37 條 (事業計劃書 등의 報告)

翌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予算書와 当該年度의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財産目錄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

| 現 行 | 改 正 案 |
|---|---|
| <p>第38條(規則) 다음 각호의 事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協會의 規則으로 定한다.</p> <p>4. (新設)</p> | <p>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p> <p>第38條(會規)</p> <p>會規로 定한다.</p> <p>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 則</p> <p>⑤ 이 定款은 1976年 12月 日 부터 施行한다.</p> |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案)

1969. 4. 14 制定
1970. 12. 30 改正
1972. 6. 15 改正
1976. 12. 11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이 法人은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以下 本協會)라 한다.

第 2 條(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있고 필요한 天
川 支部를 至 今 有다.

第 3 條(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로서 速記文化
學術의 進歩를 現 普及와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主로
하여 時代的 使命感에 副應 記錄報國의 公益에 奉仕
함으로서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러 다음 各号의
事業을 行한다.

①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②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③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④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⑤ 速記技能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速記界와의 交流에 關한 事項

第二章 會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款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이
해하고 物心兩面으로 支援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
議로서 名譽會員에 추대된 者.

2 (正會員) 正會員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한 자
격심사에 合格된 者.

3 (準會員) 準會員은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
式을 습득한 者과 습득중에 있는 者中 理事會 決
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 各款의 權利
와 義務를 가진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 운영의 諮問에 應할수
있다.

2 (正會員)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

서할 義務를 진다.

③ (準會員) 準會員은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 7 條 (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脫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를 제출한다.

第 8 條 (懲戒) ① 會員에 다음 事由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징계 할 수 있다.

1. 第 6 條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害를 끼친 때.

② 前項의 징계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謹責

3. 資格停止

第 3 章 任 員

第 9 條 本協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 會 長 1人

- 3. 理事長 1人
- 4. 理事 12人(以內)
- 5. 監事 2人

第 10 條 (送 出) 任員은 總會에서 送出하고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報告한다.

第 11 條 (任 期) ①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監事는 2年으로 한다.

②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 12 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① (會 長)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그業務를 統
理한다.

②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職
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고 本協會의 事
務를 統轄한다.

第 13 條 (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定
하는 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 14 條 (理 事) 理事는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 한다.

第 15 條 (監 事) 監事는 다음 各号의 職務를 行한다.

① 本協會의 財産事項 監査

② 理事會의 운영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의 監査

③ 前 1 号 및 前 2 号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事
實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
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④ 前 3 号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
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⑤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
務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
견을 進출할 수 있다.

第 4 章 總 會

第 16 條 (構 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議決機關이며 正會
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 17 條 (召 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年 1 回 12 月中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③ 임시총회는 正會員이 3分の1 以上の 요구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18 條 (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 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議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9 條 (議決事項) 總會에서 議決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產의 処分 賣渡·贈與·担保·貸付·取得·起債
4. 予算 및 決算의 承認
5. 事業計劃의 承認
6. 其他 主要한 事項

第 20 條 (議決除外事由) 總會 議決의 除外事由는 다음과 같다.

- ①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關한 그 自身에 對한 事項

② 金銭 및 財産의 授受에 關한 事項으로서
本協會와 利益이 相反되는 場合 關한 事項

第 5 章 理 事 會

第 21 條 (構 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
會에서 選出된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 한다.

第 22 條 (召 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나 在籍理事 4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23 條 (議 決 定 足 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
로 用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
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 한다.

第 24 條 (機 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 改正案의 提出
6. 財産管理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當하는 事項

8. 總會에 附設한 案件의 作成

9. 理事長이 附設한 事項

第 6 章 財 政

第 25 條 (財 政) ①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
財産으로 区分한다.

1. 基本財産은 法人設立時 그 設立者가 出捐한
財産과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定한 財産
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 1 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
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②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質貸 交換 또는 担保를 提
供하거나 起償하는 때에는 前記 文化公報部長官
의 承認을 受어야 한다.

第 26 條 (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에 充당
한다.

1. 會 費

2. 補 助 金

3. 贊 助 金

4. 其他收入

第 27 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28 條 (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10月 前까지 편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9 條 (會計監査) 監事는 本協會의 會計에 관한 事項을 年 2回以上 監査 한다.

第 30 條 (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하되 事業經營을 全担 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 한다.

第 7 章 執行部署

第 31 條 (部署)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各 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1. 總務部

2. 財政部

3. 渉外部

4. 監察部

5. 外國語 部
6. 研究委員會
7. 資格審査委員會

第 32 條 (各部署의 業務分担) 各部署의 業務分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 33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분의2 以上の 찬성으로 選출 한다.

第 8 章 補 則

第 34 條 (解散) 本協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재적회원 3분의2 以上の 찬성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受어야 한다.

第 35 條 (殘余財産) 本協會가 清算할 때에는 그 殘余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受어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似한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 한다.

第 36 條 (定款改正) ① 本協會의 定款改正案은 理事會決議 1/3 正會員 20名 以上の 署名捺印을 受어 總會에 提出 할 수 있다.

㉔ 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의2 以上の 찬성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부 장관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7 條 (事業計劃書 등의 報告) 翌年度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當該年度의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財産目録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第 38 條 (會規) 다음 各款의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本協會의 會規로 定한다.

1. 支部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2. 事務部署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3. 會議召集 운영에 관한 事項
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 則

① 本協會는 大韓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工 業務를 引受한다.

② (經營措置)

1. 이 定款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團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

2.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協會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③ 이 定款은 1976年 12月 11日부터 施行한다.

제 10 회
정 기 총 회 의 사 록

1976 . 12 . 11 .

사 단 대 한 속 기 형 회
법 인

第10回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期總會 議事錄

1. 日時: 1976년 12월 11일 (토) 13:00

2. 場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國會議事堂 146號 會議室

3. 在籍會員: 148名

本人出席: 95名 委任出席 17名

4. 附議案件

第1號議案: 1976年度 決算承認 及 監查報告

結果: 原案대로 通過

第2號議案: 1977年度 事業計劃(案) 及 預算(案) 承認

結果: 原案대로 通過

第3號議案: 定款改正의 件

結果: 原案대로 通過

第4號議案: 任員選出

結果: 會長 金龍泰

副會長 鄭源道

理事長 崔錫模

理事 銓衡委員會에 一任

5. 經過要領

13時 15分 司會 黃寅河 事業部長의 開會宣言과
國民儀禮에 이어 會長 인사 말씀을 金鎮基 副會長이
代讀하였음.

그리고 國會運營委員會 劉龍珪 專門委員의 來賓

祝辭가 있었고 高太仲 財政部長의 成員報告 (在籍 會員數 148名中 95名 出席)에 이어 崔錫模 理事長 으로부터 前 總會故事錄 朗讀이 있었고 異議 없이 通過되었음.

이어서 崔錫模 理事長의 會務報告가 있는 다음 1976年度 決算報告에 대하여 金善弼 監事로부터 收入支出 전표의 정리에 있어 좀더 細分化된 記載가 要望된다는 감사의견과 計數에 대하여는 決算書에 나와 있는 것과 相違없다는 報告가 있었고 異議 없이 1976年度 決算案이 通過되었음.

그리고 1977年度 事業計劃案 및 予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고 異議 없이 滿場一致로 通過되었음.

다음 定款改正의 件에 대한 崔錫模 理事長의 定款改正案 提案說明에 이어 質疑応答이 있는 다음 原案대로 通過되었음.

다음 任員改選에 있어서 崔錫模 理事長을 臨時 議長으로 推戴하여 會談을 進行한 바 現金龍泰 會長을 留任시키고 副會長으로 鄭源道 會員을 選出하였음.

그리고 16時 8分 잠시 會談中止를 하였고 16時 30分에 繼續開談하여 理事長 選出을 하였던 바 現 崔錫模 理事長을 그대로 留任시키기로 決定하였음.

다음 監事로 金永春 會員과 高太仲 會員을 選出

하였으며 理事進出은 副會長과 理事長 그리고 金基英
 會員 黃寅河會員 鄭明吉會員으로 構成된 銓衡委
 員會에서 進出하도록 全權을 委任하였던 卞理事
 로 金基英 金亨坤 宋基喆 河良培 金允洙 黃
 寅河 鄭明吉 姜宗遠 全海成會員을 進出하였음.

17時 2分 附設案件이 모두 處理되었으므로 設長
 은 閉會를 宣言하였음.

이 결의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이 設事錄을 作成
 하고 設長과 參席理事가 다음에 記名捺印함.

1976年 12月 20日

| | | | |
|------|---|---|---|
| 臨時設長 | 崔 | 錫 | 模 |
| 理 事 | 金 | 允 | 洙 |
| | 黃 | 寅 | 河 |

감사 보고서

정관 15조와 29조의 규정에 따라 1976
決算書에 대해서 監査한 결과 決算書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그러나 전표정리에 있어서 내용기재를 좀
細分化할 것을 요망합니다.

1976年 12月 11日

監事 김선필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中改正(案)

提出年月日: 1976. 12.

提案者: 理事會

提案理由

文化公報部所管 非營利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關한 規則 (1976. 3. 22 文化公報部令 第53号) 의 社団法人 定款準則에 의거, 任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하고, 監事의 職務를 強化하고 監督官庁에 의 報告를 明文化하고 現實에 맞게 字句整理를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副會長을 1人으로 함 (案第9條 第2号)
- 나. 任員의 任期를 4年으로 함 (案第11條 ①)
- 다. 監事의 職務를 強化함 (案第15條)
- 라. 議決除斥事由를 新設함 (案第20條)
- 마. 事業計劃書等의 報告를 新設함 (案第37條)
- 바. 第8章 (事務局) 削除함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中改正(案)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6号中 “速記文化의”를 “速記界와의”로, “第7号”를 削除하고,

第5條 第2項 “(資格~~查~~에 관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를 削除하고,

第6條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 各号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①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 運營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② (正會員)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③ (準會員) 準會員은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8條”를 “第7條”로, “第9條”를 “第8條”로, 同條 第1号中 “第7條”를 “第6條”로, “第10條”를 “第9條 (任員)”로, 同條 第2号中 “2人”을 “1人”으로, “第11條”

를 "第10條"로, "第12條"를 "第11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送出) 任員은 總會에서 送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第11條(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監事는 2年으로 한다.

② 補送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余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3條"를 "第12條"로, "第14條"를 "第13條"로, 同條中 "總務理事"를 "理事長이 指定하는 理事"로, "第15條"를 "第14條"로, "第16條"를 "第15條"로, 同條 3. 4. 5 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1号 및 第2号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處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更正를 要求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4. 第3号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進출 할 수 있다.

“第17條”를 “第16條”로, “第18條”를 “第17條”로,
“第20條”를 “第18條”로, 同條第1項中 “在籍構成員”
을 “在籍會員”으로, 第19條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議決事項) 總會에서 議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 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處分, 売渡, 贈與, 担保, 貸與, 取得, 起債
4. 予算 및 決算의 承認
5. 事業計劃의 承認
6. 其他 主要한 事項

第20條(議決除外事由) 總會議決의 除外事由는 다음과 같다.
①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에 關한 事項
② 金錢 및 財産의 授受에 關連되는 事項으로서 本協會와
利害가 相反되는 者에 關한 事項

第21條中 “理事”를 “理事長과 理事”로, 第22條 但書를
削除하고 “第24條”를 “第23條”로, “第23條”를
“第24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
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한다.

第24條(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改正案의 提出
6. 財産管理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8. 總會에 附設할 案件의 作成
9. 理事長이 附設하는 事項

“第7章”을 “第6章”으로, “第28條”를 “第25條”로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財政) ①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区分한다.

② 基本財産은 売渡, 贈與, 貸貸, 交換 또는 担保로 提供하거나 起債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9條”를 “第26條”로, “第31條”를 “第27條”로 하고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會計年度 /

11月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0條"를 "第29條"로 하고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되되 事
業運營을 專担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
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6章"을 "第7章"으로, "第25條"를 "第31條"로 하
고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部署)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
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
長 各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1. 總 務 部
2. 財 政 部
3. 涉 外 部
4. 事 業 部
5. 外 國 語 部
6. 研究委員會
7. 資格審査委員會

"第26條"를 "第32條"로, "第27條"를 "第33條"로,

"第8章 事務局"을 削除하고 "第9章"을 "第8章"으로,

“第35條”를 “第34條”로, “第36條”를 “第35條”로,
“第37條(定款變更)”을 “第36條(定款改正)”으로 하고 同
條 第1項中 “定款改正”을 “定款改正案”으로 하고 第37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事業計劃書等の 報告) 翌年度の 事業計劃書 및 予算
書와 当該年度の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0月 以内に 財産目録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第38條中 “規則”을 “會規”로, 第4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則 ③ 이 定款은 1976年 12月 11日부터 施行한다.

新·旧條文對比表

| 現 行 | 改 正 案 |
|---|--|
| <p>第4條(事業) 6. 外國速記文化의 交流에 關한 事項</p> <p>7. 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關한 事項</p> | <p>第4條(事業) 6. 外國速記界와의</p> <p>-----</p> <p>7 (削 除)</p> |
| <p>第5條(會員資格)</p> <p>② (正會員) 正會員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한 자격심사에 合格된 者 (자격심사에 關한 사항은 會規로서 定한다)</p> | <p>第5條(會員資格)</p> <p>② (正會員) -----</p> <p>-----</p> <p>---者 (削 除)</p> |
| <p>第6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協會의 運 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p> | <p>第6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 員은 다음各号의 權利와 義 務를 가진다</p> |
| <p>第7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号의 義務를 가진다</p> | |
| <p>第8條(會員의 脫退)</p> | <p>第7條(會員의 脫退)</p> |
| <p>第9條(懲戒)</p> <p>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 지 아니한 때</p> | <p>第8條(懲戒)</p> <p>1. 第6條의 -----</p> <p>-----</p> |
| <p>第10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p> <p>2. 副會長 <u>2人</u></p> | <p>第9條(任員) -----</p> <p>-----</p> <p>2 副會長 <u>1人</u></p> |

現 行

改 正 案

(新設)

(新設)

第17條(構成)

第18條(召集)

第20條(定足數) ①總會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9條(附議事項) 總會에 附
議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2. 予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報告한다.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16條(構成)

第17條(召集)

第18條(定足數) ①總會는 在籍會
員

第19條(議決事項) 總會에서 議
決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處分, 売渡, 贈與
擔保 貸與 取得 起償

| 現 行 | 改 正 案 |
|--|--|
| <p>4. <u>任員選出에 관한 事項</u>
 5. <u>其他 委任事項</u></p> | <p>4. <u>予算 및 決算의 承認</u>
 5. <u>事業計劃의 承認</u>
 6. <u>其他 主要한 事項</u></p> |
| <p><u>(新 設)</u></p> | <p>第20條(<u>議決除斥事由</u>) <u>總會議決</u></p> |
| | <p>의 <u>除斥事由는 다음과 같다.</u>
 1. <u>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에 관한 事項</u>
 2. <u>金錢 및 財産의 授受에 關聯되는 事項으로서 本協會의 利害가 相反되는 者에 關한 事項</u></p> |
| <p>第21條(構成) <u>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 構成한다.</u></p> | <p>第21條(構成) -----

 ----- <u>理事長과 理事로 構成한다.</u></p> |
| <p>第22條(召集) -----
 <u>다만,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u></p> | <p>第22條(召集) -----
 <u>(但書 削除)</u></p> |
| <p>第24條(定足數) <u>理事會는 在籍 構成員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한 者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u>
 <u>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u></p> | <p>第23條(定足數) <u>理事會는 在籍 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한다.</u></p> |

現 行

改 正 案

第 23 條 (附設事項) 理事會에 附
設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關한 事項
2. 總會에 附設된 案件의
予備審議에 關한 事項
3. 予算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
4. 事業計劃 運營에 關한 事項
5. 定款改正案의 提出에 關
한 事項
6. 會員加入의 決定에 關한
事項
7. 會員懲戒에 關한 事項
8. 其他 重要事項

第 7 章 財 政

第 28 條 (財政) ① 本協會의 財産
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
産으로 한다.

第 24 條 (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改正案의 提出
6. 財産管理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8. 總會에 附設된 案件의 作
成
9. 理事長이 附設하는 事項

第 6 章 財 政

第 25 條 (財政) ① - - - - -
- - - - - 普通財産으
로 区分한다.

1. 基本財産은 法人設立時 그
設立者가 出捐한 財産과 理
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定款
財産으로 한다.

| 現 行 | 改 正 案 |
|--|---|
| <p>㉓ 基本財産은 年 / 回 1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p> | <p>2. 基本財産은 - - - - -
- - - - -
- - - - -</p> |
| <p>㉔ 基本財産은 賃貸處分 其他私權을 設定하거나 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p> | <p>㉔ 基本財産은 売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担保로 提供하거나 起債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
| <p>第 29 條 (歲入等) - - - - -</p> | <p>第 26 條 (歲入等) - - - - -</p> |
| <p>第 31 條 (會計年度) - - - - -</p> | <p>第 27 條 (會計年度) - - - - -</p> |
| <p>(新設)</p> | <p>第 28 條 (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會計年度 / 10 月前까지 編成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
| <p>第 30 條 (會計監査) - - - - -</p> | <p>第 29 條 (會計監査) - - - - -</p> |
| <p>(新設)</p> | <p>第 30 條 (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되되 事業 運營을 全担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p> |
| <p>第 6 章 執行部署</p> | <p>第 7 章 執行部署</p> |
| <p>第 25 條 (部署) 理事會에서 다</p> | <p>第 31 條 (部署) 理事長의 指示를</p> |

現 行

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 1人을 둔다.

1.

2.

3. 宣傳部

第 26 條 (各部署의 業務分擔)

第 27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第 8 章 事務局

第 9 章 補 則

第 35 條 (解散) -----

第 36 條 (殘余財產) -----

第 37 條 (定款變更) ① 本協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 決議나 正會員 20名以上의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新設)

改 正 案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 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3. 渉外部

第 32 條 (各部署의 業務分擔)

第 33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削 除)

第 8 章 補 則

第 34 條 (解散) -----

第 35 條 (殘余財產) -----

第 36 條 (定款改正) ① 本協會의 定款改正案은 -----

第 37 條 (事業計劃書 등의 報告)

翌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預算書와 當該年度의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財産目錄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

| 現 行 | 改 正 案 |
|---|--|
| <p>第38條(規則) 다음 각호의 事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協會의 規則으로 定한다.</p> <p>4. (新設)</p> | <p>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提出한다.</p> <p>第38條(會規)</p> <p>會規로 定한다.</p> <p>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 則</p> <p>③ 이 定款은 1996年 12月 日 부터 施行한다.</p> |

韓國大韓速記協會定款(案)

1969. 4. 14 制定
1970. 12. 30 改正
1972. 6. 15 改正
1976. 12. 11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以下 本協會)라 한다.

第 2 條(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할 時에 支部를 設치 한다.

第 3 條(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로서 速記文化·學術의 發達을 期하며 普及한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主로 하여 時代的 使命感에 副應 記錄報國의 公益에 奉仕함으로써 國家發展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러 다음 各号의 事業을 行한다.

①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②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③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④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⑤ 速記技能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 遊記界 와의 交流에 關한 事項

第二章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号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이 해하고 物心兩面으로 支援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 議로서 名譽會員에 추대된 者.

2 (正會員) 正會員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한 자 격심사에 合格된 者.

3 (準會員) 準會員은 本協會에 加入된 遊記法 式을 合符한 者과 合符중에 在는 者中 理事會 決 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 各号의 權利 와 義務를 가진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 운영의 諮問에 應할수 있다.

2 (正會員)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在는 總會의 議決事項 遵守와 對비를 辦

付할 義務를 한다.

③ (準會員) 準會員은 總會에서 意思表示 관련 할 수 있다.

第 7 條 (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書를 제출한다.

第 8 條 (懲戒) ① 會員에 다음 各号에 해당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징계 할 수 있다.

1. 第 6 條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損을 끼칠 때.

② 前項의 징계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謹責

3. 資格停止

第 3 章 任 員

第 9 條 本協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 會 長 1人

- 3. 理事長 1人
- 4. 理事 12人(以內)
- 5. 監事 2人

第 10 條 (選 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文化公報部
長官에게 報告한다.

第 11 條 (任 期) ①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監事는 2年으로 한다.

②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에 限한다.

③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 12 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① (會 長)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그業務를 統
理한다.

②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職
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事
務를 統轄한다.

第 13 條 (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定
하는 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 14 條 (理 事) 理事는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 한다.

第 15 條 (監 事) 監事는 다음 各條의 職務를 行한다.

① 本協會의 財産事項 監査

② 理事會의 운영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의 監査

③ 第 1 号 및 第 2 号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
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
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④ 第 3 号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
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⑤ 本協會의 財産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
務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 是正을 請求할 수 있다.

第 4 章 總 會

第 16 條 (構 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며 正會
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 17 條 (召 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年 1 回 12 月中에 會長의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③ 임시총회는 正會員이 3分の1 以上の 요구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18 條 (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會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 ② 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9 條 (議決事項) 總會에서 議決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処分 賣渡·贈與·担保·貸付·取得·起債
4. 予算 및 決算의 承認
5. 事業計劃의 承認
6. 其他 主要한 事項

第 20 條 (議決除外事由) 總會 議決의 除外事由는 다음과 같다.

- ① 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關한 그 自身에 關한 事項

② 金錢 및 財産의 收受에 關한 事項으로서
本協會와 利害가 相反되는 場合 關한 事項

第 5 章 理 事 會

第 21 條 (構 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關으로서 總
會에서 選出된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 한다.

第 22 條 (召 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나 在籍理事 4人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 23 條 (議 決 定 足 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
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
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 한다.

第 24 條 (機 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義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予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 改正案을 提出
6. 財産 管理
7. 定款에 외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 8. 總會에 附設한 案件의 作成
- 9. 理事長의 附設한 事項

第 6 章 財 政

第 25 條 (財政) ①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
財産으로 区分한다.

1. 基本財産은 法人設立時 그 設立者가 出捐한
財産과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起한 財産
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 1 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文化
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② 基本財産을 賣渡 贈与 質貸 交換 또는 担保로 提
供하거나 起債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
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6 條 (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에 充당
한다.

- 1. 會 費
- 2. 補 助 金
- 3. 贊 助 金
- 4. 其他 收入

第 27 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28 條 (歲入歲出予算) 本協會의 歲入歲出予算은 每 會計年度 明始 1 個月 前까지 편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9 條 (會計監査) 監事는 本協會의 會計에 관한 事項을 年 2 回 以上 監査 한다.

第 30 條 (任員의 報酬) 任員의 報酬는 總會에서 決定하되 奉養費를 全担 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 한다.

第 7 章 執 行 部 署

第 31 條 (部署)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 에 部長 委員長 各 1 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 수 있다.

1. 總 務 部

2. 財 政 部

3. 涉 外 部

4. 事 業 部

5. 外國語 部
6. 研究 委員會
7. 資格 審査 委員會

第 32 條 (各部署의 業務分担) 各部署의 業務分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 33 條 (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名以上의 찬성으로 選出 한다.

第 8 章 補 則

第 34 條 (解散) 本協會를 散解 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附屬회원 3名以上의 찬성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受하여야 한다.

第 35 條 (殘余財産) 本協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余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受여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似한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 한다.

第 36 條 (定款改正) (1) 本協會의 定款改正來은 理事會決議中 正會員 20名 以上의 署名捺印을 受여 總會에 提出 할수 있다.

② 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の2 以上の 찬성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부 장관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37 條 (事業計劃書 등의 報告) 翌年度の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当該年度の 事業実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内に 財産目録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第 38 條 (會規) 다음 각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회의 議決을 거쳐 本協會의 會規로 定한다.

1. 文部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2. 事務部署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3. 會議召集 운영에 관한 事項
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附 則

① 本協會之 大韓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工 業務를 引受한다.

② (経過措置)

1. 이 定款은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団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

2.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之 本協會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③ 이 定款은 1976年 12月 11日부터 施行한다.

第10回 定期總會

1976. 12. 11.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회 순 ==

1. 개 회
2. 국 민 의 례
3. 회 장 인 사
4. 내 빈 축 사
5. 성 원 보 고
6. 전 총회 의사록 통과
7. 회 무 보 고
8. 1976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9. 197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10. 정 관 개 정 의 건
11. 임 원 개 선
12. 기 타
13. 폐 회

회 무 보 고

1. 집행부서

| | | | |
|---------|---|---|---|
| 총무재정부장 | 고 | 래 | 중 |
| 선전부장 | 김 | 운 | 수 |
| 사업부장 | 황 | 인 | 하 |
| 외국어부장 | 노 | 영 | 민 |
| 연구위원장 | 김 | 영 | 춘 |
| 자격심사위원장 | 이 | 강 | 천 |
| 무임소이사 | 정 | 명 | 길 |
| | 김 | 복 | 동 |

2. 방학을 이용한 속기강습

| 시기 | 기간 | 장소 | 강의법식 | 수강인원 | 수료인원 |
|----|------------------|--------|--------------|---------------------------------|---------------------------------|
| 겨울 | '76
1.12~31 | 동방속기학원 | 동 방
그 래 그 | 국어 478 명
영어 184 명
계 662 명 | 국어 340 명
영어 130 명
계 470 명 |
| 여름 | '76
7.26~8.18 | 동방속기학원 | 동 방
그 래 그 | 국어 212 명
영어 114 명
계 326 명 | 국어 144 명
영어 44 명
계 188 명 |

3. 전국 속기사 기능검정

| 회수 | 일 자 | 장 소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
| 10 회
(봄) | 76. 4. 25 | 국회속기사양성소 | 국어각급 67 명
영어각급 13 명
계 80 명 | 국어각급 16 명
영어각급 7 명
계 23 명 |
| 11 회
(가을) | 76. 10. 31 | 국회속기사양성소 | 국어각급 89 명
영어각급 27 명
계 116 명 | 국어각급 54 명
영어각급 4 명
계 58 명 |

4.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 기 간 | 대상단체 및 장소 | 인 원 | 강 사 |
|----------------|---------------|------|-------|
| 76
3월 ~ 8월 | 서울
시립부녀사업관 | 50 명 | 김 영 준 |
| 76
3월 ~ 12월 | 서울
창 덕 여 고 | 70 명 | 김 복 동 |

5. 회 지 발 간 : 17 목 발간

6. 제 육 대 회 : 5. 2 산업은행연수관 (강남구하일동)

76년도 결산보고

세입

1975. 12. 20 ~ 76. 12. 1

| 관 | 항 | 예산액 | 결산액 | 비고 |
|------|---------|-----------|-----------|----|
| 기본수입 | | 293,000 | 246,000 | |
| | 월회비 | 288,000 | 241,000 | |
| | 입회비 | 5,000 | 5,000 | |
| 사업수입 | | 1,334,400 | 1,628,700 | |
| | 방축강습수수료 | 1,204,400 | 1,492,500 | |
| | 기능검정수수료 | 130,000 | 136,200 | |
| 찬조금 | | 420,000 | 600,330 | |
| 잡수입 | | 25,803 | 108,000 | |
| 이월금 | | 926,152 | 926,152 | |
| 계 | | 2,999,355 | 3,509,182 | |

세 출

| 관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 고 |
|-----|--------|---------|-----------|-----------|-----------------------|
| 회의비 | | | 154,000 | 148,100 | |
| | | 장기총회 | 100,000 | 100,000 | 총회경비, 기쁨품대 |
| | | 회의비 | 54,000 | 48,100 | |
| | | 이사회 | 36,000 | 36,000 | 이사회 9회
(66차 ~ 74차) |
| | | 부장회의 | 6,000 | 5,000 | 3회 |
| | | 차적심사위원회 | 6,000 | 4,100 | 29차 ~ 33차 5회 |
| | | 연구위원회 | 6,000 | 3,000 | 9차 ~ 11차 3회 |
| 경상비 | 사무비 | | 62,400 | 14,000 | |
| | | 사무용품비 | 12,000 | 2,000 | |
| | | 인쇄비 | 30,000 | 6,000 | 체육대회초청장
방학강습수료증 |
| | | 통신비 | 12,000 | 4,000 | 속기계 우송 우표대 |
| | | 모필및필경료 | 8,400 | 2,000 | 법인정기보고서
방학강습안내결정 |
| | | | | | |
| 수용비 | 공과금 | | 5,000 | 0 | |
| | | | 5,000 | 0 | |
| 사업비 | 방학이용강습 | | 2,141,000 | 1,499,420 | |
| | | | 975,000 | 882,500 | |

| 관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고 |
|---|--------|---------|---------|---------|------------------------------------|
| | | 입대료 | 80,000 | 60,000 | 국어 40,000
영어 20,000 |
| | | 교재대 | 300,000 | 292,000 | 국어 200,000
영어 92,000 |
| | | 강사료 | 120,000 | 60,000 | 국어 36,000
영어 24,000 |
| | | 광고료 | 390,000 | 390,000 | 동아. 조선 2회
중앙. 서울 1회
일간스포츠 1회 |
| | | 인쇄비 | 30,000 | 25,500 | 원서, 안내서, 수료증 |
| | | 인건비 | 49,000 | 49,000 | 접수자 사례비 |
| | | 수수료 | 6,000 | 6,000 | 수취실, 청부 사례비 |
| | 속기평가대회 | | 130,000 | 0 | |
| | 기능경쟁시험 | | 144,000 | 109,520 | |
| | | 임대료 | 20,000 | 14,600 | |
| | | 용지및인쇄비 | 11,000 | 2,000 | 안내서 |
| | | 광고료 | 80,000 | 59,920 | 서울 |
| | | 출제및낭독수당 | 8,000 | 8,000 | |
| | | 채점비 | 25,000 | 25,000 | |
| | 회지발간 | | 444,000 | 253,800 | |
| | | 인건비 | 24,000 | 10,000 | |

| 관 | 항 | 목 | 예산액 | 결산액 | 비 고 |
|---|-----------------------|---------|-----------|-----------|--|
| | | 광고료 | 60,000 | 47,400 | 100원 x 474매
= 47,400 |
| | | 인쇄비 | 360,000 | 196,400 | |
| | 추적학술연구 | | 102,000 | 5,000 | |
| | | 자료수집비 | 23,000 | 0 | |
| | | 연구교안인쇄대 | 25,000 | 0 | |
| | | 연구비 | 54,000 | 5,000 | |
| | 각급학교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 보조비 | 96,000 | 3,600 | |
| | 체육대회 | | 250,000 | 245,000 | |
| | | 임대료 | 30,000 | 25,000 | |
| | | 용구구입비 | 100,000 | 100,000 | |
| | | 상품대 | 30,000 | 30,000 | |
| | | 음료및식대 | 90,000 | 90,000 | |
| | 관공비 | | 200,000 | 187,150 | |
| | 예비비 | | 436,955 | 305,910 | 제9회 정기총회
부족분 79,910
제19회 방학강습
광고료부족 58,000
제6회 체육대회
경비부족분 168,000 |
| | 이월금 | | | 1,354,602 | |
| | 계 | | 2,999,355 | 3,509,182 | |

1977년도 사업계획서 (안)

| 사 업 명 | 목 로 | 예산액 | 비 고 |
|---------------------------|---|-----------|-----|
| 1. 방학 이용
속기강습 | 대상 :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
기간 : 3주간
회수 : 2회 (겨울, 여름) | 1,065,000 | |
| 2. 전국속기사
기능검정시험 | 대상 : 속기학술연수자 및 속기사
회수 : 2회 (봄, 가을) | 152,000 | |
| 3. 속기정기대회 | 대상 : 속기학술연수자
회수 : 1회 | 130,000 | |
| 4. 속기학술연구 | 속기법식개량으로 속기연구의
지변확대와 고속화를 꾀함 | 102,000 | |
| 5.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강습 | 절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이나 속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의 요청에 의한 출장 | 96,000 | |
| 6. 회지 발간 | 규격 : 32관
부수 : 1,000부
회수 : 2회
면수 : 120면 | 444,000 | |
| 7. 체육대회 | 회원간의 인화단결과 체위향상 | 250,000 | |
| 계 | | 2,339,000 | |

197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 세입 | |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과 | 항 | 목 | | | | |
| 기본수입 | | | 293,000 | 293,000 | 0 | |
| | 월회비 | | 288,000 | 288,000 | 0 | $200\text{원} \times 120\text{인} \times 12\text{회} = 288,000$ |
| | 입회비 | | 5,000 | 5,000 | 0 | $500\text{원} \times 10\text{인} = 5,000$ |
| 사업수입 | | | 1,334,400 | 1,660,500 | 326,100 | |
| | 합격강습
수수료 | | 1,204,400 | 1,492,500 | 287,700 | |
| | 기능점성
수수료 | | 130,000 | 168,000 | 38,000 | 국어
1.2급
$700\text{원} \times 40\text{인} \times 2\text{회} = 56,000$
3-8급
$500\text{원} \times 40\text{인} \times 2\text{회} = 40,000$
영어
4급
$1,200\text{원} \times 30\text{인} \times 2\text{회} = 72,000$ |
| 차조금 | | | 420,000 | 500,000 | 80,000 | |
| 잠수입 | | | 25,803 | 180,000 | 154,197 | 이자 연 18% |
| 이월금 | | | 926,152 | 1,354,602 | 428,450 | |
| 계 | | | 2,999,355 | 3,988,102 | 988,347 | |

| 과목 |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과 | 목 | | | | |
| 회의비 | | 154,000 | 204,000 | 50,000 | |
| | 장기총회 | 100,000 | 150,000 | 50,000 | 총회경비 50,000
기념품대 100,000 |
| | 회의비 | 54,000 | 54,000 | 0 | |
| | 이사회 | 36,000 | 36,000 | 0 | 3,000원 x 12회 = 36,000 |
| | 부장회의 | 6,000 | 6,000 | 0 | 500원 x 12회 = 6,000 |
| | 자책심사위원회 | 6,000 | 6,000 | 0 | 1,000원 x 6회 = 6,000 |
| | 연구위원회 | 6,000 | 6,000 | 0 | 1,000원 x 6회 = 6,000 |
| 경상비 | | 62,400 | 62,400 | 0 | |
| | 사무비 | 62,400 | 62,400 | 0 | |
| | 사무용품비 | 12,000 | 12,000 | 0 | 1,000원 x 12월 = 12,000 |
| | 인쇄비 | 30,000 | 30,000 | 0 | 2,500원 x 12월 = 30,000 |
| | 통신비 | 12,000 | 12,000 | 0 | 1,000원 x 12월 = 12,000 |
| | 모필및필경료 | 8,400 | 8,400 | 0 | 700원 x 12월 = 8,400 |
| 수용비 | | 5,000 | 5,000 | 0 | |
| | 공과금 | 5,000 | 5,000 | 0 | |
| 사업비 | | 2,141,000 | 2,239,000 | 97,800 | |
| | 방학강습비용 | 975,000 | 1,065,000 | 90,000 | |
| | 임대료 | 80,000 | 80,000 | 0 | 강의실 1실 x 2,000원 x 20
x 2회 = 80,000 |

| 과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내역 | |
|---|--------|-------------|-------------|---------|--------|--|
| 관 | 항 | 목 | | | | |
| | | 교재대 | 300,000 | 300,000 | 0 | $300 \text{원} \times 500 \text{인} \times 2 \text{회} = 300,000$ |
| | | 강사료 | 120,000 | 120,000 | 0 | $5 \text{인} \times 600 \text{원} \times 20 \text{일} \times 2 \text{회}$
$= 120,000$ |
| | | 광고료 | 390,000 | 480,000 | 90,000 | $80,000 \text{원} \times 3 \text{개지} \times 2 \text{회}$
$= 390,000$ |
| | | 인쇄비 | 30,000 | 30,000 | 0 | $15,000 \text{원} \times 2 \text{회} = 30,000$ |
| | | 수수료 | 6,000 | 6,000 | 0 | |
| | | 인건비 | 49,000 | 49,000 | 0 | $500 \text{원} \times 7 \text{인} \times 7 \text{일} \times 2 \text{회}$
$= 49,000$ |
| | 숙기평가대회 | | 130,000 | 130,000 | 0 | |
| | | 임대료 | 3,000 | 3,000 | 0 | |
| | | 문자및인쇄비 | 10,000 | 10,000 | 0 | 안내서, 원서, 답안지 |
| | | 광고료 | 40,000 | 40,000 | 0 | |
| | | 출제및답독수당 | 3,000 | 3,000 | 0 | $6 \text{인} \times 500 \text{원} = 3,000 \text{원}$ |
| | | 채점비 | 13,000 | 13,000 | 0 | 국어
$1 \text{인} \times 500 \text{원} \times 20 \text{인} = 10,000$
영어
$1 \text{인} \times 500 \text{원} \times 6 \text{인} = 3,000$ |
| | | 상장및상품비 | 61,000 | 61,000 | 0 | 상장및케이스 9개
4,500
상품
국어 상급 1, 2, 3등 = 25,000
영어 = 25,000
국어 중급 = 6,500 |

| 과 |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 기능검정시험 | | 144,000 | 152,000 | 8,000 | |
| | | 용지및인쇄비 | 11,000 | 11,000 | 0 | 안내서, 원서, 답안지 |
| | | 광고료 | 80,000 | 80,000 | 0 | 40,000원 x 2회 = 80,000 |
| | | 출제및낭독시험 | 8,000 | 8,000 | 0 | 8인 x 500원 x 2회 = 8,000 |
| | | 채점비 | 25,000 | 20,000 | △5,000 | 1인 x 500원 x 20인 x 2회
= 20,000 |
| | | 시험감독수당 | 0 | 33,000 | 33,000 | 1인 x 1,500원 x 11인 x 2회
= 33,000 (산출) |
| | | 임대료 | 20,000 | 0 | △20,000 | 원채시설이용으로 삭감 |
| | 회차발간 | | 444,000 | 444,000 | 0 | |
| | | 인건비 | 24,000 | 24,000 | 0 | 12,000원 x 2회 = 24,000 |
| | | 광고료 | 60,000 | 60,000 | 0 | 1매 x 100원 x 300매 x 2회
= 60,000 |
| | | 인쇄비 | 360,000 | 360,000 | 0 | 소판비, 본무용지대, 본무인쇄비, 본무동판비, 표지용지대, 표지인쇄비, 표지동판비, 표지도안료, 제본비 등 |
| | 속기학술연구 | | 102,000 | 102,000 | 0 | |
| | | 자료수집비 | 23,000 | 23,000 | 0 | 도서등관계자료구입 |
| | | 연구교안인쇄대 | 25,000 | 25,000 | 0 | |
| | | 연구비 | 54,000 | 54,000 | 0 | 1인 x 6,000원 x 9인 = 54,000 |

自信

| 과 | | 목 | 76년도
예산액 | 77년도
예산액 | 증△감 | 산출기초 |
|-----|----------------------|-------|-------------|-------------|-----------|---------------------------------|
| 관 | 항 | 목 | | | | |
| | 각급학교
사회단체
속기강습 | 보조비 | 96,000 | 96,000 | 0 | |
| | 체육대회 | | 250,000 | 250,000 | 0 | |
| | | 임대료 | 30,000 | 30,000 | 0 | |
| | | 용구구입비 | 100,000 | 100,000 | 0 | 쿠니롬 700원 × 130인
= 91,000 |
| | | | | | | 물. 기구 9,000 |
| | | 상품비 | 30,000 | 30,000 | 0 | |
| | | 현및 식대 | 90,000 | 90,000 | 0 | 1인 × 600원 × 150인 = 90,000 |
| 관공비 | | | 200,000 | 120,000 | Δ 80,000 | 1월 × 10,000원 × 12월
= 120,000 |
| 적립금 | | | 0 | 1,000,000 | 1,000,000 | 신설 |
| 예비비 | | | 436,955 | 357,702 | Δ 79,253 | |
| 계 | | | 2,995,365 | 3,988,102 | 988,347 | |

